KINU 학술회의총서 11-02

제1차 샤이오 인권포럼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KINU 통일연구원

KINU 학술회의총서 11-02

제1차 샤이오 인권포럼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KINU 통일연구원

제1차 샤이오 인권포럼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예원기획 (T. 02-745-8090)

인 쇄 처 (주)예원기획

ISBN 978-89-8479-620-1 93340
가 격 8,500원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매장: 734-6818·사무실: 394-0337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프로그램

13:00 ~ 13:40 **등 록**

13:40 ~ 14:00 **개회식**

개회사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축 사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환영사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학술회의

사회: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4:00 ~ 16:00 **발 표**

북한의 여성 · 아동 인권 실태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탈북여성 인권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현황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할 이유와 근거

박효종 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혜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
윤상석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16:00 ~ 16:20 휴 식

인권행사

16:20 ~ 17:20 북한인권 동영상 상영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상(증언)

김혜숙 탈북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

문동희 북한인권학생연대 대표

목 차

1 북한의 여성·아동 인권 실태

- 발표 북한의 여성·아동 인권 실태 ····· 3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41

2 탈북여성 인권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 발표 탈북여성 인권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 49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이혜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 ····· 89

3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현황

- 발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현황 ····· 99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윤상석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 131

4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할 이유와 근거

- 발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할 이유와 근거 ····· 139
  박효종 (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 157

1

발표 **북한의 여성·아동 인권 실태**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1

북한의 여성·아동 인권 실태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여성 · 아동 인권 실태

Ⅰ. 머리말

북한이탈여성들은 말하기를 북한여성의 삶은 남한여성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북한여성들도 남한여성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직장생활하고, 멋내기에 신경을 쓰며 이성교제도 하고, 결혼하여 가정살림도 '깐지게'(야무지게) 잘 하며 자녀양육·교육에도 헌신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북한여성들도 나름대로 보편적인 여성으로서의 삶,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내면으로 파고들면 북한여성의 삶은 남한여성의 삶과 다른 모습들이 적지 않다. 특히 1990년대 이래 심화,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 특히 식량난 이래 북한여성들의 삶은 남한여성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이전보다 더 크게 달라져 가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북한여성들의 삶, 인권 상황이 보다 더 열악해졌다는 것이다.

북한아동의 삶도 겉보기에는 남한아동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들 역시 내면을 파고들면 남한아동의 삶과 다른 모습들이 적지 않다. 또한 북한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동들 역시 경제난 이래 보다 나빠진 삶의 환경에서 직·간접적인 인권 유린, 인권 침해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Ⅱ. 여성 인권 실태

1. 남녀평등의 실제

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의식

북한은 정권창립 이전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고, 정권창립 이후에는 「헌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가족법」 등의 제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보장하였으며 호적제도 폐지, 국가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향상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여성 관련 법·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2001년 2월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9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1]를 통해 "북한에서 여성차별은 오랜 역사를 통해 철폐되어 왔으며, 성 평등은 단순한 평등을 넘어 여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정책 및 입법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관련 법·제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봉건적 가부장 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도 그대로 남아 있다. 북한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성과는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입법적, 제도적 기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음을 인정"하고 있다.

1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는 2006년 3월 27일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1년 11월 현재 미제출 상태이다.

나. 취업 및 직장 배치에서의 성차별

북한주민들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국가계획에 의한 사회 부문별 노동력 배치 원칙에 따라 취업 및 직장 배치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취업 및 직장 배치에서의 성 차별은 직종간의 불평등과 임금격차로 나타난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비중과 임금이 낮은 직종에 배치되며, 이로써 보건, 상업, 보육, 교양, 교육, 체신, 문화 등 상대적으로 여성 특성이 요구되는 특정부문에 여성들이 편중되는 현상이 야기된다.

2007년 12월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협약 이행에 관한 제3·4차 통합보고서(이하 제3·4차 통합보고서)'[2]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교원의 57%가 여성이며 유치원은 100%, 소학교는 86%, 중학교는 58%, 대학(college)은 23%, 대학교(university)는 19%가 여성 교원이다. 2009년에 발표된 '2008 북한인구센서스'에서도 16세 이상 근로인구의 직업별 분포 조사에서 교원 중 여성의 비중은 55.6%로 나타났다.[3] 또한 16세 이상의 북한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특정부문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4] 예를 들면, 고위관료나 관리자 직업 부분에서 남성의 비율이 83.6%이며, 봉사원, 판매원 직업 부분에서는 여성이 93.4%를 차지한다. 농림수산업 부분에서도 여성이 54.8%로 남성보다 높다.

직업 및 직장선택의 자유가 없지만 북한여성들에게도 선호하는 직업과 배치 받고 싶어 하는 직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적 연고, 이른바 '안면관계'라든가, 또는 뇌물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직장을 옮기기도 하며, 가고 싶은 직장 및 부서로 가기 위해 체력적으로 무리한 중노동도 감수한

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305~306.
3 위의 책, pp. 305~306.
4 위의 책, p. 306.

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좋은 부서, 편한 자리에 가고 싶어 여성 스스로가 당 간부나 직장 상사에게 성을 상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여성들을 노려 당 간부나 직장상사가 승진, 또는 입당을 미끼로 성적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 양정사업소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처음엔 일했어요. 쌀 포대 매는 일을 했어요. 7개월 동안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 쌀을 공급해주는 공급소에만 들어가면 이런 매는 일은 없어요. … (공급소에 들어가면) 정말 제가 살아가기는 정말 좋죠. 쌀을 창고에 넣어놓고 사니까, 그리고 또 배급을 정상적으로 타고 하니까, 그 직업을 따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5]

> 그런 경우는 더러 있는 거 같아요. … 누가 뭐, '저 사람은 누구랑 관계가 좋더니 뭐 어떤 자리를 받았다' 뭐 이런 말은 해요.[6]

다.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가사 역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북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녀성은 가정의 주부이며 온 가정에 건전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차넘치게 하는 꽃이다. 늙은 부모들이 여생을 값있게 보내도록 잘 돌봐주는 것도 녀성들이며 남편이 혁명사업을 잘 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받들어 주는 것도 안해이며 혁명동지인 녀성들이다. 아들 딸들을 낳아 키우는 것도 녀성들이며 그들을 혁명위업의 미더운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첫째가는 교양자도 녀성들이다.[7]

---

5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8월 7일 면접.
6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4월 22일 면접.
7 박영숙, "가정혁명화와 녀성들의 책임," 『조선녀성』, 3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북한의 가족법에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18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의 가정생활은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세대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가정에서 '세대주'라고 불리는 남편은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며, 이러한 권위로 남편의 외도, 또는 가정폭력까지도 용인된다. 북한의 가정에서 여성은 남편에 대해 종속적인 지위에 있으며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은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된다.

북한의 가정생활이 수직적 부부관계에서 세대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 유교관념인 남존여비관이 북한사회에 뿌리 깊게 잔존해 있음을 말해 준다. 북한에서 남존여비사상은 "남자를 존대하고 녀자를 천대하는 착취사회의 반동적 륜리도덕관"이며 근절되어야 할 봉건 유교사상의 잔재로 규정되어 있으며, 북한은 주장하기를 법·제도적으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남녀평등이 구현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북한사회에 남존여비사상이 만연해 있으며 북한여성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근원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식량난으로 인해 가족단위로 생계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따라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에서 일단의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식량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남편들이 장사에도 나서고, 밥 짓기, 청소, 아이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하며 아내를 돕는가 하면, 여성들에 의해 생계가 유지됨에 따라 가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가부장권의 약화를 시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가정에서 가부장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데에는 식량난, 경제난이 근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식량

1999), p. 15.

난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떠맡게 되면서부터 그동안 가장으로서의 절대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세대주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라고 한다.

첫째, 가족부양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아내에 대한 연민과 고마운 마음에서이다. 둘째, 직장에 다녀도 '생활비'(월급)를 벌어올 수 없는 가장을 대신하여 아내가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안일과 아내의 장사를 돕는다. 셋째, 식량난 이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폭력을 이유로 여성들이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8]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유사한 사태 발생을 우려하여 아내에 대해 적극 배려한다. 넷째, 주민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아내의 일을 도와 가정살림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이다.

> 전반적인 흐름은 뭔가 하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많이 도와줘요. 이게 고난의 행군이 만들어 놓은 그 뒤끝이, 남자가 여자들이 불쌍한 걸 알고, … 밤새도록 남편이 불도 때주고 꽈배기 밀가루 반죽도 같이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9]

> 우리 남편도 살림이라는 것은 할 줄도 몰랐는데 제가 전역 각지로 장사를 다니면서 사니까 살림을 저절로 하게 되고 그랬어요. … 가정 살림,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그렇게 …. 남자들이 그 전에는, 배급 줄 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배급이 끊어지고 나니까, … 장마당에 나가 앉아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하니까 남자들이 집에서 다 밥 하고 집을 거두고 그랬지요. 애들도 키우고 그렇게 살았어요.[10]

> 북한 남자들이 술을 먹고 여자들을 잘 때리거든요. … 자기 부인 때리는 것은

8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적이지만, 가족을 부양하며 경제권을 손에 쥔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남편에 대해 저항, 반발하며, 특히 남편의 폭력행사나 경제적인 무능력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도 한다.

9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7월 22일 면접.

10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5월 20일 면접.

우선이고요. 그렇게 여자를 홀시하고 괄시하고 천대하고 엄청 그랬어요. …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구태여 때리는 남편하고 살아서 뭐하겠어요, 그래서 갈라진 가정이 많더라고요. …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남편들이) 여자들을 많이 생각해 주고, 그런 가정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11]

세대주의 권위 약화는 가정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실상 식량난 이후 여성이 가족부양을 하게 되면서 세대주가 가장의 권위를 의식적으로 보다 강화하여 행사하려는 가정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이를테면, 여성의 경제력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 '가정폭력'으로 반응하는 세대주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식량난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감에 따라 경제력을 가진 여성들의 발언권이 보다 강해졌으며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의식이 점차 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에 대한 의식변화는 가족부양을 위해 헌신적·희생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연민과 고마움이 근원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북한주민들의 한국 드라마·영화 시청과 중국을 오가며 듣고 본 여성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변화의 속도를 더하였다.

여자들이 활동을 세게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좀 세지요. 발언권도 있고. 여자들이 장사를 잘 못하는 집은 잘 못 살고, 여자들이 장사를 잘 하는 집은 잘 살고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권한이 올라가게 되지요.[12]

우리는 여자 하는 일 따로 있고 남자 하는 일 따로 해야만 했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부엌일에 남자가 나서면, 저거 진짜 여자한테 쥐어 산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드라마, 한국 드라마 보면서는 사람들이 문화적 식견도 좀 달라진 거 같아요. … 집집마다 달라도, 그래도 (한국)드라마 영향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주방일은 여자가 한다' 하는 인식이 좀 깨진 거예요. 발전한 거 같아요.[13]

11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6월 10일 면접.
12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5월 20일 면접.

여성에 대한 의식 변화를 초래한 또 하나의 요인은 보다 높아진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이다. 식량난으로 인해 떠맡겨진 가족부양의 책임은 여성들에게 과도한 노동 및 건강악화를 초래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이를 테면 여성들은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사회 공적·사적 연결망 활용, 자금조달, 이윤배가, 수지타산에 따른 상품선택 등 나름대로의 장사 수완 내지 요령을 터득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국경연선을 포함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북한인, 중국인 등 다양한 상인들과 거래하고, 남자들과 함께 외화벌이라는 명목으로 비법적인 밀수품 밀매매를 하는 대담성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동과 외국인(중국인) 상대로 인해 북한내외의 사정에도 밝아졌다. 이와 같이 주로 장사를 통해 가족부양을 하고 부를 축적해 나가면서 여성들은 "여자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의식도 달라졌으며 이러한 여성들을 보는 사회적 의식(인식)도 달라졌다는 것이다.[14]

여성에 대한 의식변화는 노동당 문예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는 소설작품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의 소설은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발표된 작품들이다. 소설에는 생활고를 겪는 아내에 대한 연민과

13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5월 26일 면접.

14 그러나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장사를 위주로 한 여성들의 경제활동량이 증대한 것만을 가지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둘째, 경제활동량도 중요하나 활동의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바, 예를 들면 장사를 할 때에 부당한 거래나 이윤 추구 등은 식량난 이전에 여성들이 지녔던 직업의식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셋째,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가족부양을 위한 장사는 농산물이나 단순한 물품 거래에 불과했으며, 장사 외의 부업 역시 전문지식이나 세련된 기술 내지 오랜 숙련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이 아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종래 북한여성들이 지녀온 직업수행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넷째,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논하기에는 북한여성들이 가족부양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과도한 노동과 성폭력의 경험, 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너무 심각한 정도이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북한여성의 경제활동은 가족의 생계유지라는 부담을 안고 시작되었으며 여성 자신의 의지로서 중단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집안일을 돕는 남편,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을 타박하고 핀잔을 퍼붓는 아내, 그리고 이를 묵묵히 감내하며 오히려 아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는 남편의 모습 등이 그려져 있다.[15]

그러나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체제구조가 시사하듯이 아직도 북한사회 전반에는 남존여비사상이 만연해 있다. 따라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생활의식,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구조에 있어 가시적인 변화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현상들을 종래의 가부장적 생활의식과 성역할 분담성·고정성의 약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북한 남자들은 여성을 무시하는 편이며, 여성들이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남성들의 처지가 조금은 달라지기도 했으나 여성을 낮게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상류층의 생활을 했던 30대의 북한이탈주민 남성은 40대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여전히 남존여비사상을 지니고 있는바, 남자들은 여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내는 남편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16] 북한은 2002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고정된 성역할 분담은 거의 제거되었으나 남성은 바깥주인, 여성은 안주인이라 불리거나 큰일은 남성의 일, 잡다한 업무는 여성의 일로 여기는 등의 관습적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밝힌바 있다.

> (경제력으로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해진) 그런 집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 그렇다. 말이 그렇지 남자들 앞에서 다 꼼짝도 못한다. (부인은) 나가서 하루 종일 돈벌어오면, 남자들은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영화 보는데, (부인이)

15 안흥윤, "회초리," 『조선문학』 (2001.8); 윤경찬, "푸른 꿈," 『조선문학』 (2003.2); 정해경,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 『조선문학』 (2001.5); 변월녀, "푸르른 대지," 『조선문학』 (2001.9); 김문창, 『열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등 참조.

16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남편한테 꼼짝 못한다. … 남자들은 여자들과 살다가 맞지 않을 때 여자를 막 때려서 내쫓는다. 막 때려서 내 쫓으면 갈라서지 않나, 남자는 다시 장가갈 수 있는데, 여자는 못 간다. 누가 데려다가 살 남자가 없다. 그렇게 갈라진 사람(여성)들은 안 데려다가 산다. … 처음에 여기(한국) 왔을 때 기분이 나빴다. 여자들이 술을 마시니까, … 기가 막혀서, 여기 조선 남자들이 처음 여기 와서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한다. 거기(북한)는 여자들이 술도 안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 것으로 ….[17]

남존여비, 이거는 여기(남한)보다도 거기(북한)는 더 한다. 나서부터 부모한테서 본 것이 그거다. … (남자는) 이렇게 공대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만 인식이 되어 있다.[18]

2. 과도한 노동과 건강 악화

가. 과도한 노동 부담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 특히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여성들은 가장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여성들에게 가족부양의 책임이 떠맡겨진 데에는 남편 뒷바라지, 자녀 돌보기 등의 집안일과 관련된 문제는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적인 성역할 분담의식과 남자가 장사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이 기본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이와 같은 성역할 분담의식 및 사회적 통념은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존여비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성들의 가족부양 부담을 보다 가중시킨 현실적·직접적인 요인은 경제난의 악화·지속으로 인한 공장, 기업소의 가동 중단이다. 원자재 및 전력 부족, 설비 낙후 등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고 직장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노동법 규정에 따라 남자들은

17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12일 면접.
18 북한이탈주민, 000, 2009년 3월 19일 면접.

직장에 나가야만 했으므로 여성들이 가장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유지를 떠맡게 된 것이다.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위해 힘쓰는 경제활동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것은 장사이다. 장사는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개인들의 상행위가 공식 허용되고 시장이 공식화·합법화(2003.3)됨에 따라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전업주부는 물론 직장여성들의 대부분도 장사에 나섬으로써[19] 북한당국의 제재가 발동하기까지 하였다. 여성들에 대해 장사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한 것이다.[20] 그러나 식량난 이래 가족부양을 떠맡은 여성들에게 있어 장사는 거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므로 연령 제한에 걸리는 여성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연로한 부모나 50대, 60대의 아는 여성들을 앞세워 장사를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여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여성들은 소량의 먹을거리와 옷가지 등 생활용품을 가지고 매일 장마당에 나가 팔거나, 또는 공산품이나 지역 특산품 등을 싸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장사하는 이른바 '행방'을 하기도 한다. 특히 장마당 장사와는 달리 지역이동을 하며 장사를 하는 '행방'을 하는 여성들은 신변안전 문제로 인해 적지 않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한 '행방'을 다니는 여성들은 짧게는 몇 날, 길게는 수십 일에서 수개월 동안 집을 떠나 생활하며, 이때에는 신변안전과 장사 짐 분실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으로 인해 극심한 긴장상태로 지내야만 한다.

또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 등, 경제활동을 쉼 없이 하면서 일상적인 집안일도 전담해야 하는 북한여성들의 노동 부담은 지속적인

19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정 금액만 내면 출근으로 처리되므로 많은 직장여성들이 직장에 적을 두고 개인 장사를 하며, 휴식일, 또는 정기 휴가 등을 활용해 장사를 하기도 한다.

20 나이 제한은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지역에 따라 40세 미만, 또는 49세, 54세 등 다양하다.

경제난으로 인해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조치들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함에 따라 보다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가사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난 이래 소수의 부유층 여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북한여성들의 일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노동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한다.

여성들은 '아침 식전 동원'이라고도 하는 '가두노력동원'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이는 하루 일과 시작 전에 각 세대별로 양어장 파기, 사적관건설 등에 의무적으로 동원되어 돌 나르기, 모래 운반 등을 하거나 김매기, 모내기 등 시기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을 하는 것이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직장여성들의 대부분은 전업주부와 다름없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퇴근 후에도 장사 등 부업 활동을 하느라 바쁘고 힘들게 지낸다. 또한 퇴근 후에 동원되는 '사회작업'으로 노동 부담에 시달린다. 직장여성들은 하루 근무를 마치고 나서 한 시간, 또는 두 시간씩 풀 뽑기, 양어장 건설, 분토과제 등 '사회작업'을 수행하며 작업과제는 시기별로 주어진다. 겨울에는 퇴근 후의 사회 작업이 없는 편이지만 대신 의무적으로 할당된 인분을 내야 한다. 예를 들면 겨울 3개월 동안 종업원 1인당 2.5톤의 분량을 내야하며, 아니면 돈으로 환산하여 할당량을 완수해야 한다.

> 여덟 시간 일하고 뒤 끝에 또 모입니다. 사회작업이라고 하는데요. 2시간 해가지고, 일체 보수 없는 작업에다가, … 무슨 여름철에는 풀 뽑기 해라, 무슨 또 양어장 건설하는데 또 해라, … 겨울에는 크게 건설이야 못하잖아요, 그때는, 그 대신 아침에 지도원들이고 뭐고 무조건 1인당 10키로그람씩, 하루에 나올 때 바께쓰 하나씩은 인분, … 그게 의무적으로….[21]

21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5월 26일 면접.

또한 노동 부담이 큰 북한여성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나 이마저도 조직생활 때문에 여의치 않은 바,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생활총화, 학습, 노력동원 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좀처럼 쉴 틈이 없다고 한다.

나. 건강 악화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으로 인해 많은 북한여성들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양 상태에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과도한 노동을 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이 더 나빠지고, 가족부양의 책임 증대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배가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영양실조로 인해 북한여성들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건강이 크게 나빠졌는바,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떨어지고, 영양부족 상태에서의 수태로 인해 유산, 또는 사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제난에 따른 의료보급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잘못된 피임 및 낙태를 시도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중국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피임기구를 잘못 사용하거나, 낙태수술은 불법이므로 병원이 아닌 집에서 마취도 거의 하지 않는 시술로 낙태를 시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식량난 이후 여성들 사이에 특히 생계형 매춘으로 인해 성병을 앓는 여성들이 적지 않으나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마당에서 구입한 중국약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형편이며, 이에 따라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주장하기를 북한의 모든 여성들은 건강증진을 꾸준히 도와줄 호(戶)담당의사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책임 있는 보살핌을 받으며, 98%가 넘는 임신여성들이 출산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22]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여성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출산

하며 출산 및 산후조리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의류 공급도 중단됨에 따라 속옷 부족 및 불량으로 인해 여성들 사이에 부인과 질환이 많다고도 한다. 여성들의 대부분이 중국제 속옷을 구입해 입으며, 오래 입기 위해 나일론 속옷이나 다른 사람이 입었던 불결한 속옷을 오래 입는 경우에 부인과 질병을 앓게 된다는 것이다.

3. 성폭력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남성위주의 성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여성에 대한 경직된 순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으며, 학교 및 사회에서의 성교육 부재에서도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북한에서 체육교원을 했던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중학교의 여학생 실습과목에서 재봉, 재단, 요리 등을 가르치며 성교육은 생리시기를 알려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23]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겪으면서 보다 심화되었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여성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납치 인신매매,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인 형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국경연선지역을 중심으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pp. 18~19.

23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5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종래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주로 입당 및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하여 발생하였다. 이를 테면 일부 여성들이 입당하기 위해 당 간부에게 성상납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편한 자리를 얻고 승진하기 위해 직장 간부에게 성상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24]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문제시되지 않는 편이다.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성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여성들을 낮게 대우하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폭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직장 내에서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수모 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여성 스스로가 침묵하며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의 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떠맡게 된 이후로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입당이나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한 성폭행보다는 장사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마당 안전원, 열차 승무 안전원, 군인 등이 단속을 이유로 성폭행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식량난 이후 발생한 성폭행 사례들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은 중국에서 강제송환 되어 온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다. 강제송환 되어 구금시설에 수용되면 당국으로부터 가혹행위나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돈이나 비밀문건을 찾기 위한 몸수색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성폭행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와 성폭행 외에 남편의 아내 구타, 곧 가정폭력도 심각한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최근에도 여전히 북한의 가정에서 남편들의 가정 폭력은 흔한 일이며, 특히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한 남편들이 아내와 딸들을 때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25]

---

24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25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을 문제시하지 않으며,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맹)도 개입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부화(간통)사건이나 가정폭력은 가정문제라고 하여 여맹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보안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의 일이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으며, 당 기관에서도 폭력을 행한 남편에게 충고, 또는 비판을 하는 정도라고 한다. 또한 매 맞은 여성들의 대부분은 신소를 하는 것 자체가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실태는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며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의하면 주부들이 식량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오히려 남편의 음주와 구타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 가정들이 적지 않으며, 남편의 심한 구타로 인해 부인이 가출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관한 통계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는 곧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발생률과 원인·결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도입하고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 범죄행위가 되도록 하며, 폭력의 피해여성들과 소녀들이 즉각적인 구제 및 보호수단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기소, 처벌받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하였다.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여성들 사이에서 성매매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매매는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며,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사례도 증가하

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강제적인 성매매 사례도 적지 않으며 특히 간부, 또는 그 자녀들의 요청에 따른 성매매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주장하기를 여성들은 김정일의 '어버이 사랑'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공화국'(북한)은 여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녀성들의 천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여성들은 관련 법·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감수하며 가족을 부양하기에 바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 공화국에서는 녀성을 생활의 꽃, 행복의 꽃이라고 한다. … 녀성들은 어머니로서, 안해, 누이로서 더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 공화국에서 녀성들의 사회적 불평등은 자취를 감춘지 이미 오래다. … 공화국에서처럼 녀성들을 위한 법령과 법규가 많고 사회적 시책들이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기의 능력과 포부를 마음껏 꽃피우고 있는 녀성들, 자식 키울 걱정, 가정생활에 대한 걱정은 나라가 다 맡아 풀어주고 녀성들은 자기의 일터와 사회에서 눈부시게 활약할 수 있는 녀성들의 천국 ….[26]

26 오성길, 『행복의 창조자』 (평양: 평양출판사, 2006). pp. 238~240.

Ⅲ. 아동 인권 실태

'세계인권선언'(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협약) 전문에 따르면, 아동은[27]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고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북한은 주장하기를 창건 초기 이래로 어린이들은 나라의 미래이자 나라의 '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여 왔으며 「헌법」, 「교육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안전법」, 「장애자보호법」,「가족법」 등의 채택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28] 한 예로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제1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아동의 대부분은 아동으로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난 이래 삶의 환경이 보다 열악해짐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유린, 침해당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1. 만성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장애와 질병 확산

북한의 대다수 아동들이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2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에서 아동의 연령은 "16살까지"로 규정되어 있다.(제2조).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p. 19.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협약 이행에 관한 제3·4차 통합보고서[29](이하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북한 아동의 19.5%가 저체중, 34.0%가 만성영양장애, 6.1%가 급성영양장애이다. 2009년 12월에 발간된 UNICEF 보고서에는, 2003~2008년 기간에 6세 미만 어린이 23%가 저체중, 9%가 급성영양장애, 45%가 만성영양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30] 이와 같은 실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 애들도 성장장애도 받고, 그래서 애들이 키가 다 작고 …. 아시겠지만 지능장애도 오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벌거벗고 한창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 애들이 도로라든가 마을 구석에서 흙장난하고 놀고 그런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31]

또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계가 무너지고, 특히 방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990년대 중반 이래 비위생적인 식수와 생활환경으로 인해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이 수시로 널리 퍼져 수많은 아동들이 희생되었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흔한 어린이 질병은 설사와 급성 호흡기 계통 전염병이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은 2000년 이래 아동사망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으며 2005년 현재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1,000명당 5세 이하 사망 아동의 수)은 40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2009 세계 아동현황' 연례보고서에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55명이며 세계 189개국 가운데 62위를 나타내고 있다.[32] '2010

29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두 차례(1996.2/2002.5)의 이행보고서 제출에 이어 2007년 12월에 제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0 UNICEF, "The State of World's Children," special edition (November 2009), Table 2. Nutrition.

31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9일 면접.

년 세계 인구현황보고서'에는 유아사망률(신생아 1,000명당 유아사망률)이 47명,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2005~2010)은 63명으로 나타나 있다.[33]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이 제출한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34]를 통해 북한에서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육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특히 아동의 심각한 영양부족으로 인한 성장발육 부진, 체력 저하, 또는 사망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제23항).

최근 북한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마약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북한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마약 복용 및 거래가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드물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복용 및 거래 사례는 주로 중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중독 현상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5] 이와 관련해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북한 아동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감정적·심리적 발달 및 복지에 대한 유해한 영향, 아동의 약물 남용에 의한 사고 증가, 국가의 양귀비 농장 노동에 아동 동원 등의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제61항).

2. 신체적·정신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 '꽃제비' 생활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식량난을 겪으면서 부모의 사망으로 아이가 버려지거나, 또는 부모에 의한 자녀유기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후 양육에 대한 부담 등으로

32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9," p. 117.
33 UNFPA, "The State of World Population 2010," p. 96, p. 102.
34 2007년 북한이 제출한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아동권위원회의 심의가 2009년 1월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심의 후 최종견해가 채택되었다.
35 『뉴시스』, 2011년 1월 5일.

인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또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집밖으로 나와 떠돌아다니는 북한의 아동들은 이른바 '꽃제비'라는 이름으로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다. '꽃제비'는 한 때 그 수가 줄어들기도 했으나 지난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로 꽃제비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폐개혁 이후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물가폭등에 시달리며 주민들의 생활고가 보다 더 심화됨에 따라 집밖으로 나와 역 앞이나 장마당 등지에서 배회하며 먹을 것을 구하거나, 때로는 먹을 것을 훔치기도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 아이들은 식량난 때 부모들이 못 키워서 온 아이들도 있다. 부모들이 죽으면 친척들이 거기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자기들이 키우기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 대체로 부모들이 버린 경우가 많다. 버리는 것도 있고 … 거리에다가 막 버린다. 버리면, 잘 걸리면(되면) 보육원 가는 것이고 못 걸리면(되면) 죽는 것이다.[36]

> 꽃제비 요즘 많죠. … 아동 꽃제비들은 기본 역에, 철길 역에 많죠. 따로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격리시설 그런 것, 그런 시설이 없어요. 꽃제비상무(구호시설) 그런 거 있었는데 ….[37]

북한당국은 이러한 꽃제비들을 보호, 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식량난이 극심해진 1990년대 말 이래 지역별로 수용소(구호소)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나 수용된 아동들의 배고픔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등 이들의 보호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도 북한당국은 시·군 단위로 꽃제비 구제(호)소를 설치, 운영하고는 있으나 엄격한 규율 생활에 대한 부담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구제(호)소를 몰래 빠져나오는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

36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12일 면접.
37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0일 면접.

'중등학원'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다. 거기에 가보면, 거지 다니는 것 보다 그 아이들이 못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뛰쳐나온다. 나오는 게 낫다고…. 중등학원은 청소년 꽃제비들이, 보육원은 갓난아이부터 유치원까지 ….[38]

학원은 부모들이 이혼하거나, 부모가 죽었거나 하면 학원에서 키우는데, … 여기로 말하면 고아원이죠. … 꽃제비상무 같은 것 있어요. 그냥 아이들을 가두어 놓죠. 복도 문을 채워 놓죠. 아이들이 자꾸 뛰쳐나가니까. 그 안에서 밥을 먹여주는데, 조금씩 주니까 아이들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자꾸 뛰쳐나가고 도망치려고 하죠. …밥 조금에다 소금국 주니까, 자기가 힘들다보니까 뛰쳐나가서 자기가 (낚아)채어먹든, 얻어먹든 그렇게 하고 살아요.[39]

꽃제비 학원 …. 부모 없는 아이들 키워주는 학원이어요. 그 학원이 얼굴 다 까매가지고 빌어먹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거기서 집단 생활하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밥이나 국이나 먹여주는 거 같아요. 하루 세끼 …. (그런데) 그 조직생활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쳐 나오더라고요.[40]

이런 막힌 (구호소)생활이 익숙하지 못하고, 거기서 먹는 것을 배부르게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죽지 않게끔 주는 거니까, 어쩔 때에는 나가서 훔쳐 먹는다든가 배불리 먹을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배도 안 부른데다가 제시간에 일어나야 돼, 제 시간에 자야 돼, 뭘 해야 돼 …. 아이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자유생활이 좋으니까. 또 뛰쳐나가는 거죠.[41]

한편 북한당국은 각 가정에서 꽃제비 아동들을 데려다 기르는 것을 사회적 미풍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2,528개 가정에서 부모를 잃은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8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12일 면접.
39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7일 면접.
40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4일 면접.
41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1일 면접.

북한은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아동이 성착취에 이용된 사례가 없으며 아동매매 및 유괴 관련 사건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대로 식량난 이후 북한과 중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많아졌으며 1990년대 말 이래에는 10대 소녀들까지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미성년 여자아이들의 성매매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당국은 아동권협약 제37조에 해당하는 아동의 사법권과 관련하여 제2차 이행보고서와 제3·4차 통합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도 아동에 대한 체포, 구금, 투옥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89조와 제190조에 의거하여 검사의 승인 하에 방과 후 집이나 특정구역에 아동을 감금하며 그러한 감금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의 법률은 국제협약, 특히 아동권협약의 기준에 역행하지 않게 개정되어 왔는바, 한 예로 아동의 사형적용 연령이 17세에서 18세로 조정되었으며, 보고기간에 아동이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우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보고기간(2001~2007년)에 고문,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불명예스런 대우, 처벌을 받은 아동이 없었다고 북한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송환되는 아동들은 취조과정에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며 수용소 생활 중에는 구타, 중노동, 배고픔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아동들이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꽃제비, 당국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은 아동, 경찰, 또는 다른 국가 기관에 구금된 아동들이 구금기간에 가혹하게 다루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는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제31항).

3. 교육권 유린 실태

가. 우상화 및 정치사상 위주의 교육

아동권협약 제29조에 따르면 아동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등을 지향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이를 구현하는 학교의 사명, 그리고 교육목표 관련 법조문 등이 시사하고 있는바,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정치사상교육이며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인격함양을 위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과과정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우상화 및 공산주의 사상교육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상화와 관련해서는 소학교 4년 동안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어린시절'을 배우고, 중학교 6년 동안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혁명활동', '혁명력사' 등을 배운다. 또한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김일성·김정일·김정숙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를 답사한다.

나. 의무적인 조직생활과 의무 노동 및 군사 훈련

교육은 인격의 완성과 인격존엄의식의 온전한 개발을 지향해야 하며(국제인권규약 A규약 제13조 제1항), 아동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지향해야 한다(아동권협약 제29조 제1항). 그러나 '조선소년단' 생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생활 등 일상적인 의무적 조직생활로 인해 북한 청소년들은 교육에 의한 보편적 인격의 완성을 방해받으며,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의 학습활동은 집단화·획일화 되어있으며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는 특정학습을 강요당하는 바, 이는 곧 북한청소년들이 교육내용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제31조)과 사회주의노동법(제15조)은 16세 노동연령과 노동연령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청소년들은 실천투쟁 속에서의 혁명적 단련이라는 명분하에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농촌, 또는 사회주의건설 현장으로 동원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실천의 결합 원칙 구현, 노동애호정신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법제화된 청소년들의 '의무노동'은 그와 같은 노력동원을 극대화하는 데에 적극 활용된다. 북한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따르면 북한 청소년들은 중등반이 봄에 한 차례 약 4주 동안, 고등반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약 8주 동안 의무노동을 하며, 이때에 농촌지원이나 사회건설에 동원되어 청소년들에게는 과도한 노동을 수행하게 하는바, 이러한 노동수행은 교육에 방해가 되는 정도였다고 한다.[42] 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농촌지원은 한 해에 한 달씩 하는데 농업 관련 과목으로 정해져 실시된다고도 한다.

> 중학교 때 농촌지원하는 그런 것은 학과 과목으로 치거든요. … 그걸 무슨 농업에 대한 한 개 과목으로 만들어 놨어요. …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 달씩 합숙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게 한 과목이에요. 1년에 한 달, 의무노동이요. 벼 모내기 할 때 기본 많이 가죠. …좀 약한 아이들은 다 병나고, 일하고 그렇죠. 매일 과제를 주니까, 무조건 해야 되니까, 거기서 혹사되면 병나고 그렇죠.[43]

관련 소식지에 따르면 하루 보통 8시간 이상 노동을 말하는 '일공노동'은 아이들에게는 시키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평안북도 신의주의 중학생들이 야산 과수밭 조성에 노력동원 되어 '일공노동'을 하였다고 한다.[44] 201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최근에도 북한의 아동

42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7월 14일 면접.
43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0일 면접.
44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38호 (2010.03.30).

들은 연 2~3회씩 농촌지원과 사회건설에 동원되고 있으며, 농사철에는 소학교 3학년 이상부터 매일 1~2시간씩 농촌에 노력동원 되고 있다고 한다.

> 8시부터 (수업)시작하면 1시 10분인가 20분이면 끝나는데 그때 학생들을 다 보내요. 그러면 집에서 밥 먹고 학교로 (다시) 가요. '왜 가는가' 하면 일하러 간대요. … 길거리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쓸데없는 일들에 조그만 아이들 계속 동원 시키고, … 학교 내에서도 하고 학교 밖에서도 하고 …. 돌 나르고 이런 거 해요. … 10달(월)이라든가, 9달(월) 되면 (농촌지원) 거기 가고, 봄에도 가요. 1년에 두 번 가요. 그거 안가면 돈 내야 되요. 80만원 씩 …. 한 번 나가면 한 달반, 두 달까지 합숙해요. 가서 농촌 일 해요. 힘들어요. 얼굴도 까맣게 타가지고, 먹는 것도 못 먹고 계속 작업해요.[45]

> (김매기, 모내기, 풀 뽑기 등) 처음(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가을까지 학생들이 해 주어야 한다.[46]

> 노력동원은 진짜 많이 나갔어요. 1년에 너무 많이 나가니까 셀 수가 없어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중학교 때에는 매일 나갔던 것 같아요.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호미자루 들고 낫자루 들고 가서, 가을철에는 낫질하고, 이제처럼 심어서 곡식이 자랐을 때에는 풀(뽑기), … 오후수업 할 때에는 오전에 가고, 오전수업 할 때에는 오후에 가고, 진짜 맨날 나간 것 같아요. 정말 지겹도록 갔어요. … 한 달 아예 수업을 안 하고 나가는 것이고, … 방학 때에도 대부분 농촌지원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 (공부에) 방해를 많이 받았죠. 상당히 많이 받았죠.[47]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아동권위원회는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 헌법상 아동노동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북한 아동들

45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4일 면접.
46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4월 28일 면접.
47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1일 면접.

은 학교생활의 일부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직업교육의 목적을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고 육체적 부담이 크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동임을 지적하였다(제59항).

한편 북한의 아동교육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의무적 군사훈련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5학년 때에 2~3주 정도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에 나가 군사 훈련을 받는다. 2010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최근에도 중학교 5학년생들은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을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1주일씩 강행군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 훈련에는 여학생들도 참가하며 학생들은 훈련을 오락으로 여겨 재미있게 했다고도 한다.

> 군사훈련도 했었어요. … 3주 정도, 총 쏘기도 배우고, 군인의 기본자세도 배우고, 그 다음에 공격 때 자세라든가 방어 때 자세라든가 그런 거, … 그러니까 붉은청년근위대라는 것이 어느 기관에, 군사 교육을 주는 그 기관에 가서 배우죠. 옛날에 군대 복무한 제대군인들 기본 많이 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날 무렵에 실탄을 쏘고, 여느 때 훈련할 때는 빈총 가지고 해요. … 5학년 때 해 봤어요. … 여학생도 많이 갔어요. 군복이라는 게 군대 군복하고 다르고, 옛날에 항일복 같은 것을 입죠. … 3주 동안 합숙이요. 하나의 오락으로 여겨서 재미있었어요.[48]

아동의 군사 훈련과 관련하여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아동권협약 제29조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의 군사적인 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아동의 초기 군사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제57항).

48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0일 면접.

다. 성분에 따른 선별적 진학

아동권협약(제28조 제1항)에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해 북한은 교육법에서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 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한다(제4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청소년의 공교육에의 접근은 '11년 무상의무교육제'에 따라 제도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1980년 3월부터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국가판정시험)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은 공정한 실력 경쟁보다는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출신성분과 당성(조직생활평가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성분에 따른 선별적 진학은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교사를 양성, 배출해 내는 사범대학에서 이루어진다.

1990년대 이래 대학진학에 있어 출신성분이나 당성보다는 공부실력, 부모의 권력배경, 경제력 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계통의 대학에서는 실력을 우선으로 하며, 좋은 성분이 아니더라도 뛰어나게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이·공계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경제난 이후로 외화를 많이 보유한 계층의 자녀들이 뇌물을 주고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 대학도 요새 뇌물만 있으면 다가요. 종합대학도, 내가 올 때에도 시험 한 과목 통과하자면 10달러 주면 통과한다고, … 돈만 있으면 됩니다.[49]

라. 무상교육의 실제

북한은 1975년 9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49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4월 28일 면접.

있으며,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경제난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이 잘 이루어진 편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부족하나마 매 학기마다 주던 학용품 공급 주기가 3~5년으로 길어졌고 경제난이 심화된 이후로는 아예 공급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정에 있어 평양의 특수학교는 예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특수학교를 다닌 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교과서 공급도 차질 없이 잘되었고, 학용품만 개인이 장마당에서 돈을 주고 구입해 썼다고 한다.[50] 경제난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와 학용품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방, 학습장, 공책, 연필, 필통 등은 거의 모두가 중국제품이라고 한다.

한편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학교예산이 부족해지면서 교육부담의 상당한 정도를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는데, 연필, 종이 등 학용품은 물론이고 학교 건축, 학교 건물 관리, 그리고 겨울철 땔감용 나무까지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지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로 각 학교에서 거두는 화목비 실태를 보면, 소학교에서는 화목비를 현금으로 거두며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산에 가서 땔나무를 마련해 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집단 등교 거부 사태도 몇 차례나 발생했다고 한다.[51]

이와 관련하여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교육의 전반적인 질과 학교 기반시설이 자원의 구조적 부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이며 자연재해나 경제적 고난으로 인해 결석률이 높다는 데에 우려를 표하였다(제52항). 또한 아동권위원회는 교육과 관련한 부가적인 비용이 높은 결석률을 초래한 요인임을 우려했다. 관련 소식지에 따르면

50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8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51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6일 면접;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11호 (2008.02.13).

최근에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등지의 소학교와 중학교들에서는 굶주림과 이로 인한 질병 등으로 출석률이 낮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세외부담으로 인한 생활고로 자녀들의 학교 교육을 아예 포기하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한다.[52]

> 아이들이 학교 많이 안가죠. 내라는 게 많으니깐 …. (농촌 지원) 그거 안 가면 돈 내야 되요. 80만원 씩 ….[53]

> 학생들이 학교를 아주 못가는 집들도 있어요. (부모가) 안 보내는 집도 있죠. 세 부담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그런 집 많이 봤어요. … 우리 동네 있을 때 학교 다닌 아이들이 절반밖에 안 돼요. 돈이 없어 안 보내죠. 내라는 돈, … (책상) 도색하는 돈 다 아이들이 다 하고 몽땅 교과서도 아이들이 돈 내고 사야 되고, 학교에 유리창이 깨졌다고 하면 유리창도, 모두 일체 다,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아요. 다 돈을 거두죠. '돈 얼마씩 가지고 와'. 안가지고 오면 다시 쫓아 보내죠. '돈 가져와라' 연속해서 거의 매일 그러다시피, 3일에 한번씩은 '돈 내라. 돈 내라' 하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엄마들은 '학교 가지마' 그러죠. 아주 정말로 중학교도 못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54]

북한의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형편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는 북한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국제인권규약 A규약 이행보고서(제2차)를 통해 북한은 1995년 자연재해로 많은 학교 시설의 파괴와 교육기자재 유실, 그리고 교육기자재 및 관련부문 생산단위의 손실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55] 또한 북한당국은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 2007년 8월과 9월의 홍수로

52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31호 (2010.02.1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59호 (2010.08.04).

53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4일 면접.

54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7일 면접.

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제2차)』, 2002년 4월 9일.

인해 316개 학교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으며, 그 결과 35,040명의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여전히 모든 어린이들은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 아래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완전한 기회가 주어지는 무상의무교육을 받으며 소학교 입학률은 100%이고, 진학률은 99.7%, 졸업률은 100%라고 주장한다.[56] 그러나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 북한의 아동들은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Ⅳ. 맺음말: 여성·아동 권리 관련 법 제정과 시사점

1990년대 이래 심화,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인권 상황이 보다 나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 실태는 상대적으로 보다 더 열악한 편이며 특히 식량권, 건강권, 신체적·정신적 보호권 등의 실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녀성권리보장법」(이하 여성권보장법)[57]과 「아동권리보장법」(이하 아동권보장법)[58]을 채택,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부문법 제정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과 아동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p. 19.

57 여성권보장법은 제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 제2장 '사회정치적 권리',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제4장 '로동의 권리', 제5장 '인신 및 재산적 권리',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제7장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7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8 아동권보장법은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3장 '교육, 보건 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6장 6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치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녀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이 채택됨으로써 남녀평등을 보장하며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우리 국가의 일관한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59]되었다는 것이다.

두 부문법 제정은 여성 및 아동 권리와 관련해 다른 법령들에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단일 법안으로 체계화하였다는 데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또한 실제에 있어 「여성권보장법」·「아동권보장법」 제정이 기존의 관련 법령을 보완 내지 보강하여 여성과 아동의 인권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북한당국이 밝힌 대로 법 제정의 의의가 구현된다고 할 때, 두 부문법 제정은 보다 중대한 의의를 갖게 된다.

두 부문법의 각 조항의 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관련 규칙 내지 법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대체적으로 여성 및 아동 관련 선행 법령들에서 주요 내용들을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보완 내지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두 부문법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선행 관련 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화함으로써 유엔의 여성권 및 아동권 관련 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와 개선 촉구를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부문법의 '법의 규제범위와 적용' 조항에서 북한이 가입한 관련 국제협약은 국내법인 두 부문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국제협약 이행의 의지를 부각, 과시한 것도 특징적이다.

또한 두 부문법의 '국제교류와 협조' 조항에서는 여성권 보장과 아동권 보장에 있어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 협조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여성권 및 아동권과 관련한 외부의 지적 내지 권고를 수용하고 문제해

59 『민주조선』, 2011년 1월 26일.

결을 위해 적극 협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도 특징적이며 의의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두 부문법은 북한 여성·아동의 인권 개선에 있어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다. 두 부문법은 여성·아동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내지 수단, 절차 등을 명시하기보다는 원론적·선언적으로 관련법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북한의 가정폭력문제를 지적하고 관련법 도입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여성권보장법」은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고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기업소·단체에 대해 가정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전개하여 가정폭행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원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정폭력 관련법 도입뿐만 아니라 피해여성들이 즉각적인 구제 및 보호수단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기소·처벌받도록 보장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으나, 「여성권보장법」에는 가정폭행 피해여성 구제 및 보호 규정이 없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명시하지 않았는바, 가정폭행 근절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지가 소극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권협약(제32조3항)에서는 아동의 노동금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처벌 혹은 제재수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권보장법」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공민은 아동에게 노동을 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원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동권협약(제37조)에서는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권보장법」(제47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사건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원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위와 같이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은 관련 협약들에 규정되어 있는 당사국의 의무를 일부 반영하고는 있으나 선언적·원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2009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인권보장 조항'(제8조)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지난 해 말, 「여성권보장법」과 「아동권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법제정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규탄 및 개선 촉구를 의식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의도성 있는 법적 조처일 개연성도 낮지 않다고 할 때, 법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이행 촉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문창. 『열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박영숙. "가정혁명화와 녀성들의 책임." 『조선녀성』. 3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9.

변월녀. "푸르른 대지" 『조선문학』. 2001.9.

안홍윤. "회초리" 『조선문학』. 2001.8.

오성길. 『행복의 창조자』 평양: 평양출판사, 2006.

윤경찬. "푸른꿈" 『조선문학』. 2003.2.

정해경. "녀성도 다 어머니로 되는가." 『조선문학』. 200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 (제2차)』. 2002년 4월 9일.

_____.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체출된 국가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11호 (2008.02.13).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31호 (2010.02.1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38호 (2010.03.30).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59호 (2010.08.0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서울: 통일연구원, 2005.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9."

UNFPA. "The State of World Population 2010."

『뉴시스』. 2011년 1월 5일.

『민주조선』. 2011년 1월 26일.

토론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이 글을 통해 북한 여성·아동의 인권실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었던 점은 좋았다.

2. 몇 가지 부연하거나 참고할 내용에 대해

○ 여성문제를 다룰 때, '북한 사회의 시장화'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많아졌다.

- 통신과 교통수단의 '시장화' 등: 철도, 장거리버스가 시장가격으로 운영… 이처럼 내부에서 생활의 편의가 확충되는 시장화의 효과로 생활개선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인권상황이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측면을 살펴야 할 것이다.
- '국경통행증을 뇌물을 주고 사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고 말한다.
- 나선시와 인근지역의 운수사업소의 확충(외국의 지원적 합작투자로 운영됨, 2011년 현재 버스 8대, 3대 추가 예정), 정류장 장마당이 생기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동하는 농민들을 돕고 있다.

○ 장사와 여성들의 의식변화: 두 지역의 수요공급 차이를 연계시켜 수입을 올리는 장사를 하면서 편리한 기동력을 발휘하는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변화 속에 제도와 의식의 대립 갈등이 있다.

- 여성들의 자전거 금지령이 김정일 방침[1]으로 나왔다가 철회되었다.
- 관습적 저항: '여자가 자전거를 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봉건적 문화 낙후성과 세대 간 가치관의 갈등에서 나타난 '자전거 이혼'[2]

1 이 방침은 2000년에 내려져서 여성의 교통권이 단속대상이 되었지만, '자전거 전쟁'에 저항하는 여성들에 밀려 2010년 1월 방침에 여성에 대한 자전거와 치마단속을 없애게 되었다.

사건… 따라서 젊은 여성들이 진보성을 띠고 있는 현실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 "행방": 북한에서 행방을 떠나던 현실이 변화했다.

고난의 행군 초기의 "달리기"는 "행방 떠난다"고 했다. 행방은 국내시장들 사이의 가격차를 정확히 모르고 닥치는 대로 가 본다는 뜻으로, 시장 상황, 즉 필요 가격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표현이었다. 반대로 지금은 평양에 사는 친구와 전화 한 통화이면 칠골시장 등 평양시 물가정보를 어디에서나 알 수 있는데 이는 친구가 관련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최진이, "조선의 여론, 그 형성에서 통신기술의 역할 및 정보의 질", 『임진강』 13호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인권실태 파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무상교육과 "무료교육": 북한에서 "무료교육"으로 통용된다.

북한교육법에서 "공민은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12조)라고 했다. 본문 중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 아래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완전한 기회가 주어지는 무상의무교육을 받으며 소학교 입학률은 100%이고, 진학률은 99.7%, 졸업률은 100%라고 주장한다."

- 해마다 3월이면 미취학생들과 장기 결석생들에 대한 현지료해가 이루어지고 조사자료가 상급단위에 제출된다.(정명호, 『임진강』에서)
- 이중적인 내부 자료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2 채순, "개인소유의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왔나?-대중화된 자전거 이동수단," 『임진강』 9호 (2010). 가을. pp. 89~90.

3. 인권문제 접근에 대한 고민

-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을 이해하는 주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쉽지는 않지만) 시기구분에 의한 변화를 반영하면 어떻겠는가?

  이를테면, 화폐개혁은 여러 측면에서 이전과 이후의 생활형편의 변화도 많고, 경제 권리주장과 같은 주민의식의 변화가 많이 포착되고 있다.

- 실상의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실리적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이 법과 현실에서 이중적이고 표리부동하다는 사실은 이제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는 바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과 여성의 위기적 실태, 즉 먹는 문제, 의료, 교육상의 초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권문제를 총체적으로 제기할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북한 현실 삶의 수준에 맞춰서 "점진적, 단계별 인권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높아진 인권의식의 수준에서 아동인권을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논하기에는 북한 현실은 너무 요원하고, 실태와는 동떨어져 있다.

- 북한 경제는 지방화(중앙간섭에서 지방자립으로), 기업의 분권화(계획의 일원화에서 기업단위의 경제자율성 부여)가 관건이다. 이와 보조를 맞춰서 지방의 중등학원(소학교, 중학교 학령의 고아 수용 및 교육기관) 실태 파악과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정명호, "육아원이 제도의 모습" (『임진강』 6호) 참고)

- NGO와 협력(민관학 사회적 협력)하여 인권을 개선하는 '성과 있는 협력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원 투명성 확보, 모니터

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2010년 단동 민간지원 사례와 같은 초보적 유사사례가 있는데,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시도한 온성지역 직접 돕기 등…)

2

발표

탈북여성 인권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인턴

토론

이혜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

발표 2

탈북여성 인권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인턴)

탈북여성 인권의 현주소와 정책과제[1]

Ⅰ. 들어가며

1. 국내·외 탈북자 현황과 여성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으로 중앙배급체제가 무너지면서 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북한주민들의 탈북행렬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 건너가 신분을 숨긴 채 생활하고 있으며, 탈북이 장기화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국내 입국을 선택하게 된다.

우선 중국에 있는 탈북자의 경우 중국 정부가 공개적인 조사를 불허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다. 대신 민간단체와 관련 연구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중국 내 탈북자의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1990년대 중국 내 탈북자 수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으로 추정된다.[2] 또, 2000년 이후 미 국무부와 민간단체들

1 본 글은 발표자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이 아니며 탈북여성관련 통계 및 기존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2 윤여상, "재회 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통일연구논총』, 1998년 7권 2호, pp. 169~201; 좋은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서울: 정토출판, 1999).

은 약 3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탈북자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3]

다음으로, 국내 입국 탈북자 현황을 보면 1998년과 2001년 사이 탈북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한 해에 1천 명이 넘는 입국행렬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가 2005년 이후부터는 그 수가 2천 명을 넘어섰고, 최근 몇 년간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3천 명에 육박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증가추세 속에서 입국한 누적 탈북자의 수는 2007년 1만 명을 넘어섰고, 3년만인 2010년 11월에는 누적인원이 2만 명에 이르고 있다.[4]

〈표 1〉 입국 연도별 탈북자 현황과 여성비율

(단위 : 명)

구분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1	합계
남	594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51	6,325
여	47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515	13,725
계	641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066	20,050
여성 비율	7%	23%	46%	56%	63%	67%	69%	75%	78%	78%	77%	73%	68%

국내 입국 탈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2000년대 초반의 성비 역전현상과 최근 5년간 탈북의 여성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그 주요한 특징이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입국 탈북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에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여성 탈북자의 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여성의

3 김수암, 『탈북자 현황 및 인권』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자료집, 2010).
4 이승현·김갑식, "탈북이주민 2만 명 시대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153호 (2010).

관점에서 관련 연구와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2. 탈북자에 대한 국내·외 대응 동향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중국 등 제3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마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국제사회가 나서 탈북자의 인권 이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절에서는 남한 정부와 미국, 중국 등 관련 주변국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 정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통일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 정책에서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면, 그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개방·3000정책'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해왔다. 그리고 최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상생공영정책'을 제시하였다.[5]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정권과 주민의 분리 대응'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주민이나 탈북자의 인권이 악화되고 있는 대외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제기된 부분이다.[6]

남한 정부의 대내적인 대응으로는 탈북자지원 법안의 제정을 들 수 있다. 탈북자지원 법안은 체제선전차원의 「월남귀순용사 특별 보상법」(1978~1992)에서 사회복지차원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1993~1996)을 거쳐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현재)로 그 명칭과 내용이 변화해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의 유입에

5 이승현, "이명박 정부의 중·후반기 대북·통일정책: 현황과 쟁점," 『이슈와 논점』, 176호 (2011).

6 위의 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생활안정대책의 수립과 통일 대비를 전제로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7]

북한인권문제 및 탈북자 인권실태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미국 의회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 이를 재승인하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조치들,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8]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탈북자 문제의 해결과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집행하고,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9]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며 기근을 피해 일시적으로 불법 월경한 사람들로서, 이들을 체포 후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강제송환 원칙은 국제사회와 국내외 인권단체로부터 '난민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가입국이지만, 협약상의 당사국원칙을 활용하여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요구가 한층 높아지면서, 중국은 주변국과 협력하여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는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10]

7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7).

8 박광득,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006).

9 김종일,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 『북한』 (2010).

10 박광득,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3호 (2006), pp. 55~77.

3. 탈북자에 대한 접근방식과 탈북여성 접근: 인권이슈 부각

본 절에서는 최근 탈북 양상에서의 변화와 기존 연구들의 접근방식이 탈북자 문제, 특히 탈북여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인권의 관점에서 탈북여성이 겪어온 경험의 연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탈북자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탈북 양상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볼 때, 탈북 초기 30~40대 남성이 주축이었으나 점차 여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해 약 3,000명 이상의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고 있고,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80%에 이를 정도다.[11]

한편,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고, 관련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탈북자 집단 내부의 차이를 간과한 채 탈북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지 못했다. 특히,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탈북과정에서 형용할 수 없는 성폭력, 성착취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는 극명한데도, 기존 연구들은 이들의 경험을 동질적인 것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탈북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기존 연구에서 탈북자들의 경험의 차이가 간과되어온 상황은 탈북여성을 보다 포괄적인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이 겪는 문제들의 복합성과 다차원성, 그리고 그 경험의 환경으로서 공간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개괄적으로 짚어보면

11 이화진,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탈북자 문제를 분단/통일이나 민족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고발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되거나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 통일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수단화된다.

두 번째는, 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탈북자를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빈곤층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입장은 탈북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을 잘 짚어내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정책들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책적 차원의 접근에만 머무르는 한계가 있으며, 이때 탈북자는 정부의 수혜를 받는 지원의 대상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

세 번째 관점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탈북자를 다문화 이주민으로 보고 사회통합 방안을 제안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에 주목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탈북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탈북자 문제를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및 정착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세 가지 관점 외에 탈북자 문제를 보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바로 '인권의 관점'이다. 물론, 인권의 관점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식량난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보고도 인권 실태라고 하며, 재중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나 강제 송환자에 대한 공개처형도 인권의 문제로 본다. 하지만 이때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비상시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에서만 다루어진다. 왜냐하면 인권의 개념을 법률적 기준이나 국제인권규약의 항목에 의거해 협소하게 정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상황이 나은' 국내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룰 때 인권이라는 관점은 사라져 버린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국가나 사회의 법·제도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삶을 살아

가는 주체의 몸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여성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보다 포괄적인 인권의 관점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탈북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의 복합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하고, 그들이 경험해 온 환경으로서 북한-중국(제3국)-한국이라는 공간의 연속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탈북여성의 인권문제 관련 연구동향

북한인권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에서 북한여성 혹은 탈북여성의 인권은 부차적인 주제로 다루어져왔다. 여성의 인권이 북한인권문제의 독립적인 연구 주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을 기점으로 탈북의 여성화 현상이 뚜렷해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대체로 탈북경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북한→중국→한국 중 어느 한 공간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탈북여성의 인권에 관한 기존 연구도 이러한 공간적 분류에 따라 살펴보겠다.

1. 북한여성

지금까지 북한여성의 인권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고,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연구가 북한인권시민연합(2011)이 발간한 『북한여성에 대한 폭력실태』라는 보고서다. 이 연구는 북한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제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짚은 다음 다양한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북한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심각성을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드러낸다.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인권의 변화를 다룬 연구로는 노옥재와

박정현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노옥재의 연구는 북한의 식량난 속에서 여성이 생계부양자로 나설 수 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임신·출산·양육이라는 재생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일상화된 성폭력과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12] 박정현은 식량난 이후 생계부양자라는 여성의 지위 변화가 그들의 의식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한다.[13] 심영희는 여성주의의 시각으로 '차이'에 기반 한 인권 개념을 제안했다.[14] 즉, 기존의 인권 개념은 남성 중심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차이에 기반을 둔 '여성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반해서 북한의 기근과 여성의 생존권, 경제활동권, 가족에 대한 권리, 몸과 성에 대한 권리 등을 검토했다.

〈표 2〉 북한여성 인권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명	주요 내용
북한인권 시민연합 (2011)	북한여성에 대한 폭력실태: 부서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	- 폭력의 실제적인 원인 - 다양한 맥락에서 가해지는 폭력의 심각성
노옥재 (2003)	북한식량난 속의 여성의 삶과 인권	- 생계부양자로서의 여성 - 재생산권의 박탈 - 일상화된 성폭력과 성매매
박정현 (2006)	북한의 경제난과 여성의 역할 연구	- 여성의 지위와 의식의 변화 - 가부장제의 유지와 여성의 의무 가중
심영희 (2006)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 여성주의적 시각·차이에 기반 '여성인권' 제안 - 북한기근 속 여성의 생존권, 경제활동권, 결혼과 가족, 몸과 성에 대한 권리

12 노옥재, "북한식량난 속의 여성의 삶과 인권," 『북한여성의 삶, 꿈, 한』 (민주평통 북한연구회, 2003).

13 박정현, "북한의 경제난과 여성의 역할 연구," (경기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14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아시아 연구』, 제45집 2호 (2006), pp. 151~ 194.

2. 재중 탈북여성

우선,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권실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연구로 홍욱화의 연구를 들 수 있다.[15] 이 연구는 탈북여성들이 신분노출의 위험 때문에 교통사고나 강도를 당해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국의 공간적·문화적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인권 문제로 강제송환과 인신매매를 들 수 있는데,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이승진의 연구다. 이승진은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권실태를 중국의 사회변화와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설명한다.[16] 즉, 중국에서 북한여성에 대한 수요가 생겨난 배경, 북한에 송환됐을 때의 처벌 등 탈북여성의 실태를 진단한다. 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국제적 인권레짐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난민지위의 인정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비정부기구의 역할을 각각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으로 주로 거론되는 것이 난민지위에 대한 인정인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 탈북여성의 인권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17] 민지원은 난민결정 기준으로서의 젠더박해를 다루면서, 북한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기준으로 젠더를 중심으로 난민에 관한 정의를 확장 적용해야 함을 지적한다.[18] 그 예로 강제송환 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성고문 및 강제 낙태,

15 홍욱화, "재중 탈북여성·고아의 삶과 인권," 『북한여성의 삶, 꿈, 한』 (민주평통 북한연구회, 2003).

16 이승진,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17 홍규덕, "탈북여성 인권보호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대안 모색," 『아시아 여성연구』 제41집 (2002), pp. 3~52; 박명희, "중국 내 탈북여성의 생존실태와 난민지위," 『신아세아』 12권 2호 (2005), pp. 115~144.

18 민지원, "국제협약상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 젠더박해와 그 근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그리고 여성에 대한 처벌이 임신과 결혼여부 등 재생산 능력이나 정절 이데올로기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젠더박해라는 개념을 끌어냈다. 이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여성에 대한 사적 공간에서의 침해가 난민이라는 정치적 개념의 인권 기준에 어떻게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표 3〉 재중 탈북여성의 인권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명	주요 내용
홍욱화 (2003)	재중 탈북여성·고아의 삶과 인권	- 재중 탈북여성의 구체적인 인권실태
이승진 (2005)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강제송환과 인신매매를 중심으로 한 탈북여성의 인권문제 - 국제적 인권레짐의 실천으로서 난민지위 인정 주장
민지원 (2003)	국제협약상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 젠더박해와 그 근거에 관한 연구	- 난민결정 기준으로서의 젠더박해 - 난민 정의의 확장·적용

3. 국내 탈북여성

한국에 입국한 탈북여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이 거론된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문제,[19] 한국 사회 적응의 미숙으로 인한 경제적인 빈곤문제,[20] 가치관의 차이나 가족 간의 갈등[21] 등이 주된 내용이다.

19 이새롭, "북한 이주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20 권영길, "여성새터민 정착시래 보고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2005); 양지윤, "여성 새터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21 성미란,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적응과정과 가족 내 갈등문제에 관한 연구,"

개인의 적응 차원에서의 문제들은 가족 간의 문제와 건강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에 온 이후 중국 배우자와의 중혼문제, 한국남편과의 가치관 차이, 자녀문제의 어려움 등이 인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22] 또한 한국에 오기까지의 힘들고 고된 여정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심리적인 트라우마와 이에 대한 지원의 부족과 필요성 등도 있다.[23]

한국 사회에서 탈북여성이 겪는 적응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탈북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체제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로서 살아가는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혜경·김영란의 연구[24]는 이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으며, 조정아[25]는 탈북여성들의 한국 내 적응문제에 관해 사회적 적응문제, 정신건강, 의식 및 가치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조영아·전우택[26]과 윤인진·장혜경 외[27]는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탈북여성의 적응문제를 검토하였다.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22 이금순, "북한 여성의 이주혼인과 인권문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2006).

23 최현실,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정착지원 방향 연구』 (2010).

24 장혜경·김영란,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여성연구』, 제60권 (2001), pp. 175~199.

25 조정아, "남한 내 새터민 여성의 삶,"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여성 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2007).

26 조영아·전우택,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권 1호 (2005), pp. 17~35.

27 윤인진·장혜경 외, "북한이주민 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관계의 변화," 『한국가족복지학』, 12권 2호 (2007), pp. 89~108.

〈표 4〉 국내 탈북여성의 인권에 관한 연구

주제 및 접근방식	연구자	연구명
사회문화적·경제적·개인, 가족 차원의 적응 문제	장혜경·김영란(2001)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이새롭(2002)	북한 이주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양지윤(2008)	여성 새터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 경험에 관한 연구
	성미란(2003)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적응과정과 가족 내 갈등문제에 관한 연구
	이금순(2006)	북한 여성의 이주혼인과 인권문제
	최현실(2010)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정착지원 방향 연구
	조정아(2007)	남한 내 새터민 여성의 삶
	조영아·전우택(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윤인진·장혜경외(2007)	북한이주민 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관계의 변화
정당·정책적 접근	권영길(2005)	여성새터민 정착실태 보고서
	이계경(200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방향: 탈북여성을 중심으로
	이금순(2002)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과제 및 대책
맥락적 접근	윤여상(2006)	북한여성의 재중 체류경험이 남한사회 정착에 미치는 영향
	이화진(2010)	탈북여성의 북한·중국·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인권위(2010)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이러한 적응의 어려움에 대하여 탈북여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들로 권영길[28]은 남한 내 탈북여성의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이계경[29]은 북한의 여성인권과 중국 내 탈북여성 실태를 근거로 탈북여성

에 대한 국가정책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이금순[30]은 탈북여성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탈북여성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한국에서의 정착과 적응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관점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도 늘어나고, 그 구성원과 입국방법이나 입국 이전의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탈북여성에 대한 연구도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맥락적인 연구를 시도하기도 한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여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에서의 삶의 영향을 고민하거나[31] 이주결혼 차원에서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연구[32]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화진[33]과 국가인권위원회[34]의 연구는 탈북여성의 인권을 맥락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동 연구는 탈북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를 공간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그녀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탈북여성의 인권실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 발제문의 맥을 이루게 해주었다.

---

28 권영길, "여성새터민 정착실태 보고서," (국정감사정책자료집, 2005).

29 이계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방향: 탈북여성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2, 2002).

30 이금순,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과제 및 대책," (민주평통 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53차 회의 자료, 2002).

31 윤여상, "북한여성의 재중 체류 경험이 남한 사회 정착에 미치는 영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료집, 2006).

32 이금순, "북한 여성의 이주혼인과 인권문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2006).

33 이화진, "탈북여성의 북한·중국·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34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0).

Ⅲ. 탈북여성의 인권실태[35]

본 장에서는 탈북여성들의 경험을 토대로 공간적 분류에 따른 인권실태를 짚어보았다. 먼저 각 절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배경을 짚어본 다음, 주요 인권 이슈를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인권침해의 양상도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자 하였다. 즉, 북한과 중국에서는 가시적인 권력에 의해 인권침해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반면, 남한에서는 보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비가시적인 차별과 배제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1. 북한여성의 인권실태

가. 배경: 식량난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와 여성

1980년대 후반 북한 경제가 쇠퇴하면서 시작된 식량문제는 1990년대 중반 연이은 자연 재해로 인해 한층 심각해졌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난은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아닌 협동농장 등 국가사회주의 농업경제의 비효율성,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전통적인 교역의 중단, 미국과 남한의 지속적인 대북 봉쇄정책으로 인한 경제 활로의 봉쇄 등 내외적인 요인과 맞물린 사회구조적 마비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36]

식량난은 대량의 아사자와 식량난민(탈북자)을 낳았으며, 어린이와 노약자의 높은 사망률로 인하여 세대단절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살아남

35 본 발제문에서 탈북여성의 인권실태는 기존 연구들인 김수암(2010), 백영옥(2003), 이화진(2010), 인권위원회(2005, 2010)에서 탈북여성을 인터뷰 한 내용(1차 자료)을 토대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36 노옥재, "북한식량난 속의 여성의 삶과 인권."

은 사람이라 하여도 영양실조와 만연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지기반인 가정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아동의 유기, 도둑과 폭력의 난무, 근본적인 가치관의 동요 등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사회통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일벌백계형의 처벌과 같은 극단적인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의 삶, 특히 여성의 삶과 인권은 심대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주요 이슈

(1) 평등과 권리 이면의 동원과 착취

북한은 1950~60년대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경제건설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려야만 했고 여성을 경제 현장에 들어가게 하는 다양한 법적·사회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관상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회적 참여를 약속하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성의 노동력을 적극 동원하여 강행적 성장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보육을 위한 국가적 조치들이 취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은 직장 노동, 사회동원, 그리고 가사노동의 다중고에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했다.

특히, 여성의 '몸'을 가부장적 남성 위계질서의 재생산 수단과 산업적 도구로 바라보고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여성 '몸'에 대한 1950~60년대 산업적 수단으로의 활용, 1970~80년대 반강제적인 여성 피임의 강요를 통한 출산 및 인구통제, 1990년대 후반 이후 식량난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를 대체할 향후 새로운 노동력 확보를 위한 출산 장려 등 여성의 '몸'은 가부장적 '보호'의 외피 속에 철저하게 동원과 착취를 위해 수단화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법적으로 기재된 평등과 권리의 조항들은 동원과 착취의 그림자를 은폐한 형식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⑵ 불평등한 기회 제공과 계급 대물림

교육영역의 경우, 교육 기회의 평등한 보장을 공식적으로 표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지배계급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물론 교육이 지배계급의 재생산에 봉사하는 기제였다는 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더 설득력을 얻는 주장이지만, 사회주회 사회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교육이 지배계급 재생산의 주요 경로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일류 대학으로의 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전히 성분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대학에 진학할 경우 상업대학, 경공업대학, 간호대학, 사범대 등 여성의 사회진출 영역의 편견에 묶여 대학 선택의 폭이 크지 못한 편이다.

노동영역 역시 교육영역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계층구조와 남녀 간 기회 불평등 구조가 접합되어 노동의 권리가 침해당해 온 대표적인 영역이다. 직업 선택에 있어 개인 자율성보다는 국가에 의한 일방적 배치가 아직까지 절대적이다. 이러한 일방적 배치 역시 출신성분이나 가계의 우수성, 부모의 지위, 당성·혁명성에 대한 자의적 평가를 통해 결정되어 왔다.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가 노동자이면 노동자로, 농장원이면 농장원으로 사는 계급적 대물림이 공식화되어 있다. 또한 고등중학교 졸업 직후 또는 군대 제대 후 집단배치를 강요하는 국가의 '희생' 담론에 의해 자신의 직업적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경제난 이후 현재까지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 특정 분야에서는 직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적인 인권침해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 탈북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인민보안성 병원에서 간호원 모집에 선발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는 물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신체검사 과정에서 진짜 처녀라면 갈 수 없는 산부인과 검사까지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⑶ 생계부양의 책임 가중

북한에서 장사는 '낯 뜨거운 짓'으로, 보통 부끄럽거나 천한 일로 취급하는 경향이 과거부터 강했다. 1990년대 이후 장사가 생계활동의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 이러한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가부장적 사회질서 내부에서는 그것이 온존하고 있다. 남성들은 경제난으로 직장에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것을 '체면'이 깎이는 일로 생각해 생계활동을 전적으로 여성들에게 전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직업적 위계와 가족 질서로 인해 여성들은 사실상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타의적(사회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의 활동은 주로 공식적인 직장에서처럼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생계 노동의 성격을 갖는다. 공식적으로 시장 매대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에서의 일과 이외에 공식적으로 적을 두고 있는 직장이나 사회단체의 정치생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하고 가사노동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사활동은 '보호받지 못하는 생계 노동'으로서 착취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여성들의 장사 활동은 다양한 사회적 폭력에 노출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시장에서의 장사부터 지역 간 이동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빙자한 남성들로부터 심리적 괴롭힘,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체로 인민보안성(경찰)으로부터 가장 큰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장관리소 사람들, 당 기관 간부, 공식·비공식적인 운송 관련 남성들, 군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⑷ 재생산권의 박탈

임신이나 출산을 한 북한여성에 대한 국가의 무상의료 지원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1990년대부터 이미 의약품이 부족해서 의사에

게 뇌물을 주고 약품을 구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해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낙태(소파수술)는 국가의 방임 아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낙태가 성행하고 있는 원인이 개인적인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과 성상납, 남편의 생계책임 회피, 국가의 방관 등 보다 구조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낙태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상처들이 여성들에게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의 무책임한 회피, 낙태 이후 신체적 후유증, 낙태의 죄책감 등이 여성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피임도구의 활용이나 임신의 책임, 출산과 보육 등 모두에서 사실상 여성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에서는 피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맡기고 있으며 조잡한 피임기구나 시술로 인한 두통, 염증 등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국가와 사회, 가족 내에서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는 장치나 관심이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2. 재중 탈북여성의 인권실태

가. 배경: 조·중 국경선과 탈북여성

북한주민들, 특히 여성들이 중국으로 탈북하기 시작한 때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했던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던 북한주민들의 국경선 왕래는 식량난 뒤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제적 문제로 떠올랐다.

대개 탈북여성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사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국경선을 넘었다. 국경선에 위치한 북한과 중국의 마을은 강을 두고 왕래

하는 이웃마을과 같았기 때문에 국경선을 넘는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중국과 가까운 두만강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구하려고 장사할 물건을 가지고 몰래 중국 농촌 마을에 들어와 식량과 교환해 가기도 했다.

식량난 뒤 북한과 동북 3성 지역 간의 역사적 관계,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물품교환 따위로 왕래가 잦았는데, 탈북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요소가 여기에 개입되었다. 자주 중국으로 드나들던 사람들이 중국 농촌 미혼 남성들에게 여성들을 데려다 주고 돈을 받기 시작했다. 시장경제 도입으로 중국에서 대도시가 발달하고 서비스업이 성행하자, 농촌의 여성들은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기혼여성까지도 가족의 경제를 돌보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여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농촌에는 홀아비가 된 남성이나 이혼한 남성, 늦게까지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 농촌에서 결혼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났고, 바로 그 자리를 탈북여성들이 채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등 외부 사회에서 북한 여성들을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북한체제가 여성들을 '밀어내는 힘'이 훨씬 컸다. 이처럼 북한 여성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여성의 일이라고 간주하는 북한의 '성 역할' 규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을 밖으로 내모는 힘으로 작동했고, 그 형태는 국가 간 '경계'를 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나. 주요 이슈

(1) 인신매매와 매매혼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여성들은 대부분 강제결혼 혹은 매춘 등 심각한 인신매매를 경험하게 된다. 미혼여성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도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한다. 불법으로 강을 넘어 온 탈북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남성과의 동거 생활 이외의 다른 체류방식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거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성적 학대, 음주나 도박 등 가정생활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탈북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거 중인 중국 남성에 의해 여러 번에 걸쳐 팔려가는 경우도 있으며, 동거하고 있는 남성의 가족이나 이웃들의 감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 남성과 장기간 동거하게 되는 경우 임신을 하게 되면, 대부분 상대 남성이 출산 혹은 유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대 남성이 탈북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클수록 출산을 선호한다. 하지만 북한 여성에게 호구를 구입해 줌으로써 불법적인 신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⑵ 강제송환

북한의 형법상 탈북행위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죄(형법 제233조 비법국경출입죄)와 조국을 배반한 죄(형법 제62조 조국반역죄) 모두에 해당된다. 중국에서 단속된 탈북 주민들은 중국 변방 부대를 거쳐 송환지역 국가보위부에서 탈북 동기 등을 철저하게 조사 받은 후 탈북 동기에 따라 처벌 형태가 결정된다. 송환 이후 보위부, 보안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난다. 보안원들은 도강의 목적과 중국 내에서의 행적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다른 송환자를 통해 정보를 캐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구타 및 언어폭력, 위협 등이 이루어지고, 형 감면을 명분으로 다른 송환자의 중국 내 행적을 증언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북한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피심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형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

하는 탈북여성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형 집행과정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노동을 시키거나 구타하여 유산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주사로 약물을 투입하여 낙태시키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출산한 여성들의 아이를 돌보지 않음으로써 사망하도록 유기하는 조치들을 보안원들이 직접 하거나 혹은 조기석방을 명분으로 동료 수감자가 영아 유기를 담당하도록 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⑶ 임금착취

조선족 집거지역인 연변 지역에는 조선말이 통하기 때문에 현지 조선족과 같은 옷차림이나 화장으로 현지인으로 위장하여 일을 하거나 교회가 운영하는 공장에 숙소를 정해 살아가는 여성들도 있다. 그러나 성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여성들은 대부분 현지인들이 꺼려하는 힘든 일, 간병인, 보모, 식모 따위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신분적인 약점 때문에 극심한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탈북자가 급증한 1990년대 후반부터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동북 3성 지역에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그나마 탈북자들에게 일을 시키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취업자 중 절반 가까이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침식만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자리를 찾아다니다 보면 공안에 의해 체포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3. 국내 탈북여성의 인권실태

가. 배경: 탈북여성의 국내 입국과 정착과정

북한에서 겪는 기아와 가족해체, 각종 생활상의 고통을 피해 중국 국경을 넘은 탈북여성들은 많은 경우 인신매매, 성폭력, 각종 인신 구속 등을 경험한다. 중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한 탈북여성들은 결국 남한 행을 결심하게 된다. 남한 역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곳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남한 정부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3개월간 탈북 동기와 입국 경위 등에 대한 개별조사를 받은 후에 하나원에 입소한다. 하나원에서는 3개월간 문화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남한 사회 이해 등 한국 사회에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의 교육이 끝나면 각자의 주거배정지로 배정되어 신변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고 정착하게 된다.

하나원에서 퇴소하여 주거지로 오면 간단한 관할 경찰서의 보안과 담당 형사들로 구성된 각자의 신변보호담당관의 간단한 면담을 거친 후에 주거지에서 살아갈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배정받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국민임대의 경우 도시개발공사와 계약)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한 다음 동사무소 내의 복지사와 간단한 면담을 거친 후 생계비 지급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러한 주거지 정착과정에서 각 지역의 민간단체나 자치단체의 지역협의회 등이 탈북들의 정착지원을 돕고 있다.

나. 주요 이슈

(1) 입국 초기 조사과정에서의 낙인과 상처의 가능성

입국 초기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두드러지는 것은 우선 독방생활에 관한 문제이다. 초기 조사단계에서 독방에는 7~10일 가량 수용되는데, 이때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독방생활에 대한 설명 부재, 감시자의 냉대, 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의 불편, 운동 부족, 가족관계 단절 등을 들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담당조사관의 몰이해와 편견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선, 담당조사관들은 탈북여성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재중 탈북여성들 대부분이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인 남성과 결혼생활을 하거나, 성매매 여성으로 생활한다는 언론 보도가 한국 사회에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수사 담당자들이 탈북여성을 잠재적인 성매매 여성으로 간주하는 태도, 혹은 이러한 처지를 동정하는 태도는 어떤 이유에서든 성매매와 관련된 여성들을 '스스로 타락한 여성' 혹은 '몸을 버린 여성'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낙인과 연결되면서, 이들의 정신적 상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탈북여성들은 국정원 등에서 심문을 받는 동안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미처 생각할 여지를 갖지 못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불법체류자인 자신을 받아준 한국 정부 혹은 국가 기관에 대해서 자신들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인간적 권리 침해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사회적 상태가 아닌 것이다. 한국의 심문 기관들 역시 탈북여성들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을 직접 알리거나 혹은 변호사 등을 통해 알리는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하나원의 적응교육에서 내재될 수 있는 차별의 경험

하나원에서는 문화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남한 사회 이해 등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적응이 내포하는 의미는 적응의 대상인 탈북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상호

소통의 파트너가 아니라 한국 사회 내 지배문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수동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통합과 동화의 관점에 있는 적응교육은 남한 사회 중심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탈북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에서 잘 드러난다. 하나원에서 이루어지는 탈북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은 소위 '여성 적합 직종'에 국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요리, 재봉, 세공, 조립, 제과·제빵, 간병·간호 분야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성별화 된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담당 지도 교사들은 "여성단체들이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북여성들에게 위에서 나열한 특정 직종에 대한 직업 교육만을 실시하는 것이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반복하여 지적받고 있으나, 탈북여성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고려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원 교사들이 말하는 구체적인 현실이란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과 한국에서의 직업 경험을 갖지 못한 탈북여성들이 실제 취직 가능한 곳은 소위 여성 노동력 집약적인 산업분야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곳이라는 뜻으로 한정되어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난 후 단기간에 취업 가능한 분야를 염두에 둔 태도이기도 하다.

현재 하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북여성들에 대한 직업 교육은 한국 여성들의 일반적인 진로 모색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탈북여성들에 대한 차별임이 지적되고 있다.

⑶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정부의 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제도는 2005년, 2007년 개인의 '자립, 자활 의지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직업 훈련을 감수하고 일정한 기준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정착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정된 정착지원금 제도에서 노령자·장애인을 위한 정착기본금과 경제활동 연령자들을 위한 정착가산금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세대별·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아직 정착기본금을 받을 연령이 되지 않는 40~50대 탈북여성들의 경우 정착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획득하는 데 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40대가 넘어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여성들의 경우 직업에 관한 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40대 이상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40~50대 탈북여성들은 지원제도에서 소외된 집단이다. 또한 개정된 정착금 지원제도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점은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상처에 대한 고려이다. 현재 지원제도는 '정상적인' 육체와 정신을 가진 20~30대 성인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한 탈북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상처'를 경험한 집단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는 전혀 다른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개인들로 2~3개월의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의 평범한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정착금제도는 한국사회에 가능한 빨리 정착시키기 위한 효율성 차원이 아니라 탈북여성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4대 보험을 보장하는 정규직 분야에 취업한 경우 지급하는 취업 장려금 때문에 오히려 탈북자들의 신분이 원하지 않게 드러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자신을 '탈북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위험'하다. 탈북자라고 밝히는 순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사회적 지원을 받기 위해 '커밍아웃'의 위험, 즉 인권의 침해라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사회복지와 인권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실현되고 있다.

(4) 일상에서의 차별과 배제

탈북여성들은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 그들이 겪는 차별과 배제는 우선, 한국 사회와 실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탈북여성들은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정보들이 없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남한 사회의 각종 제도와 규범을 잘 알고 있을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혹시 질문을 하게 될 경우 탈북자라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북한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간접 경험이나 판단 때문이다. 무엇인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기 위해 사회적인 무시나 차별을 받는 대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탈북여성들은 일하다가 다쳐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탈북여성들은 유·무형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공간 및 직업 현장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는 반세기의 분단과 냉전 체제로 인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같은 민족이면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한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탈북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탈북자'라고 신원을 밝힐 경우 취업을 거부당하는 것이다. 심지어 면전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중국 교포를 쓰지, 북한 사람은 안 쓴다"는 대답을 듣기도 한다.

이 같은 차별과 배제는 탈북여성의 정착지원을 돕는 기관 담당자들에게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탈북여성들을 달갑지 않은 사회복지 수혜자로 바라본다. 즉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특정한 사회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시민권적 권리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가 아니라, '시혜적 차원의 특혜'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여성들은 기관 담당자들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고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Ⅳ. 나오며: 탈북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지금까지 탈북여성 인권이슈의 중요성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탈북여성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짚어 보면서 본 원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북한이나 제3국에 있는 탈북여성의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제사회의 책임과 노력을 중심으로, 국내에 입국한 탈북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행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개선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1. 국외 탈북여성을 위한 과제

첫째,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난민규정에 대한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은 난민을 지나치게 정치적 측면으로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유민과 환경유민도 난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단순히 경제적 유민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고, 송환될 경우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과 접촉해 온 국내외 민간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하여 경험적인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종전과 달리 중국 내 탈북자 중 '소수의 난민'을 인정한 만큼 이들의 지원을 받아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근절되고, 결혼의 합법성이 인정되

어야 한다. 성매매는 중국 법에서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근절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 및 NGO, 한·중 여성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인 남성과 사실상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혼인관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중국에서 출산한 탈북여성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됨으로써 새로운 이산가족들이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이 탈북여성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출산, 2세의 신분, 여성복지, 중국사회 적응훈련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개발해 중국 여성계와 연대해 중국 정부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 여론 형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이 탈북자들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중단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여론을 형성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정부는 강제 송환되어 왔거나 자발적으로 귀향한 탈북자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난민들은 대부분 가족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들을 범법행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들의 처벌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도록 국내외 단체가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펴야 할 것이다. 2002년 6월 미국 의회는 탈북자들의 안전한 망명과 북한 송환 중단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숨겨져 있던 탈북자 문제를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 및 국제기구는 북한의 탈북자 처벌 중단을 위한 국제적 여론의 형성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활동 강화이다. 전 세계

3천 4백만 명에 달하는 난민의 80%는 여성들로 국제기구와 관련 NGO단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인권 유린의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여성들은 외부 세계에 '숨겨진 삶'을 살고 있어,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외 NGO 및 국제기부와의 연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여성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련 여성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틀 속에서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2. 국내 탈북여성을 위한 과제

탈북여성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의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제도는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제도라는 점에서 탈북여성들이 남한 생활을 하는데 물질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교육 또한 이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원 교육 이후의 사회생활에서는 정착금지원, 교육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등을 받게 된다(참고자료 참조). 한국에 입국하여 소정의 심사와 교육을 받은 탈북여성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형식적인 국적이 곧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공동체 참여와 자기실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동정의 관점'이 전제되어 있는 지원 정책은 탈북여성의 인권을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으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진 정치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를 기반으로 한국 시민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탈북여성의 인권은 한국사회의 동등한 소통적 파트너로서 가져야 할 시민권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탈북여성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여성들에 대한 관련기관들의 인권감수성제고 노력 및 탈북여성들의 인권의식고양을 위한 인권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탈북여성들은 한국에 입국한 뒤 거치게 되는 심문조사 기관과 교육 기관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과 태도를 체험하고 있다. 달리 말해 국가의 수사기관 및 교육기관이 탈북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탈북여성들의 경우 긴 탈북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인간적 권리를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적 조건에 놓이게 되지만, 이에 대한 지원 기관의 노력은 부재하다. 따라서 탈북여성들에 대한 수사 및 교육 기관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며, 나아가 탈북여성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인권의식을 전유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인권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지원정책을 인권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사회적응지원제도와 동시에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에 대한 중장기적인 치료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과거 북한 및 제3국에서의 체험이 현재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삶 속에는 과거의 기아, 인신매매, 성폭력, 가족의 실종과 죽음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질병과 무기력,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등은 이전 시기의 트라우마와 연관된 신체적·정신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사회적응 및 효율성을 중심에 둔 현행 지원정책을 인권 중심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에 대한 중장기적인 치료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호 1종 수급권을 본인 및 가족의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구성의 권리 및 시민적 권리의 차원에서 탈북여성 인권의

지평이 확대되어야 한다. 탈북여성들의 현재 삶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북한, 중국 및 제3국, 한국으로 흩어진 가족의 상봉이다. 자신의 사회적 응보다 더 절실한 것이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만남을 위한 노력이다. 현행 지원법이 탈북여성의 가족 구성의 권리 및 시민적 권리의 차원으로 그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탈북여성들이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한 탈북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각종 범죄 및 비리, 혹은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한 정부 혹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탈북여성들 스스로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 할 수 있는 자치조직에 대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즉 탈북여성들의 처지와 경험을 가장 잘 아는 탈북여성들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자료 : 탈북자 지원 제도

정착지원제도 :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에게 기초생계 해결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초기정착금으로는 정착기본금, 정착장려금 및 정착가산금이 있다. 탈북자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정착기본금(1인 기준)으로는 임대주택을 위한 주거지원금 1,300만 원(1인 기준)과 하나원을 졸업하면서 지급되는 300만 원의 초기 지급액, 그리고 1년 동안 분기별로 지급되는 300만 원의 분할 지급분이 있다. 이와 같은 정착 기본금 1,900만 원(1인 기준)은 2004년 이전의 3,590만원과 비교하여 크게 낮아졌다.

정착가산금은 취업능력이 부족한 노령자, 장기 질병을 가진 사람,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노령자에게는 720만원의 연령 가산금(1인 기준)이 지급되고, 편부모 아동에게는 360만원의 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1인 기준)이 지급된다. 또한 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장애가산금은 1,540만원(1급)에서 360만원(4~5급)의 규모이다.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 월 80만원씩 지급되는 장기치료 가산금이 있다. 정착장려금은 개정된 지원제도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항으로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및 취업을 촉진시키기 인센티브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장에 취업하여 동일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는 경우 정착장려금이 지급된다.

탈북자들에 대한 거주지 정착 지원으로는 대한주택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이에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금을 제공한다. 주거지역은 우선적으로 탈북자들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보장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탈북자들에게 월 37만원(1인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탈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지원제도 :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08년도 개정된 초중등학교법 시행령은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두어 북한 학교에서의 이수정도, 수학능력, 연령을 고려한 학력 인정기준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학력 인정과정을 제도화하고, 가능하면 탈북 청소년들이 연령을 중심으로 학년을 배정하는 남한 학교의 원칙에 따라 학년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경우 국립대학은 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사립대학은 국가와 학교가 각각 2분의 1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만 위의 학교에 지원하는 탈북자들의 연령을 3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학비지원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이내, 또는 대학진학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에 지원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 외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능대학 및 평가 인정을 받는 평생교육훈련 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이내에 입학하면 학비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각 급 학교와 교육보호담당관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지원제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의 제공과 각종 장려금 지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직업훈련은 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에 포함된 기초직업적응훈련부터 전문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사후관리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직업훈련 체제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기초직업적응훈련은 한국폴리텍대학의 1개

월 훈련과정으로 정보화, 산업안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직업훈련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산업 현장이나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견학하는 것도 훈련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문직업훈련은 직업훈련을 받는 당사자가 희망하는 직종이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노동부 산하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진다. 3~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전체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에는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상담을 지원하고, 취업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후관리를 맡아 탈북자들의 취업을 돕는다. 다음으로 취업과 관련된 장려금으로는 앞서 정착지원제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을 들 수 있다. 직업훈련장려금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자격취득장려금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이나 자격기본법에 의한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장려금은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5.

_____.『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인권침해』.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0.

권영길. "여성새터민 정착실태 보고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2005.

김수암. "탈북자 현황 및 인권."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자료집. 2010.

김종일.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북한』. 2010.

노옥재. "북한식량난 속의 여성의 삶과 인권."『북한여성의 삶, 꿈, 한』. 민주평통 북한연구회. 2003.

민지원. "국제협약상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 젠더박해와 그 근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박광득.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대한정치학회보』. 2006.

박명희. "중국 내 탈북여성의 생존실태와 난민지위."『신아세아』. 2005.

박정현. "북한의 경제난과 여성의 역할 연구." 경기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북한인권시민연합.『북한여성에 대한 폭력실태: 부서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 2011.

성미란.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적응과정과 가족 내 갈등문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아시아 연구』. 2006.

양지윤. "여성 새터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윤여상. "재외 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통일연구논총』. 1998.

_____. "북한여성의 재중 체류 경험이 남한 사회 정착에 미치는 영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2006.

_____.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7.

윤인진·장혜경 외. "북한이주민 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관계의 변화."『한국가족복지학』. 2007.
이계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방향: 탈북여성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2. 2005.
이금순.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과제 및 대책." 민주평통 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53차 회의 자료. 2002.
_____. "북한 여성의 이주혼인과 인권문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2006.
이미경.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 전망."『가족과 문화』. 2006.
이새롭. "북한 이주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이승진.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이승현·김갑식. "탈북이주민 2만 명 시대의 현황과 정책과제."『이슈와 논점』. 2010.
이승현. "이명박 정부의 중·후반기 대북·통일정책: 현황과 쟁점."『이슈와 논점』. 2011.
이화진.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장혜경·김영란.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여성연구』. 2001.
조영아·전우택.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학국심리학회지: 여성』. 2005.
조정아. "남한 내 새터민 여성의 삶."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여성 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2007.
좋은벗들.『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서울: 정토출판, 1999.
최현실.『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정착지원 방향 연구』. 2010.
홍규덕. "탈북여성 인권보호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대안 모색."『아시아여성연구』. 2002.

홍욱화. “재중 탈북여성·고아의 삶과 인권.”『북한여성의 삶, 꿈, 한』. 민주평통 북한연구회. 2003.

토론

이혜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

분단사 60여년 역사와 대량탈북 10여년사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오늘의 "샤이오" 북한인권포럼은 매우 의미있는 자리로 생각하며 여기서 탈북여성을 대표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포럼 조직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북한에서 30여년 동안의 경험과 남한에서 거의 10년을 경험한 탈북여성으로서 북한인권의 주요문제와 남한 내에서의 탈북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토론하려고 한다.

먼저 북한 내에서의 인권문제를 여성(젠더)을 중심으로 이슈적인 문제만 짚어보고 남한내에서의 탈북여성의 인권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발제내용에 부침하려고 한다.

1. 북한 내에서의 여성의 인권문제

발제자께서 본문에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 내에서 식량난 이후 생계부양의 책임가중과 재생산권의 박탈로 인한 성 불평등이 초래하였다. 이로 인한 복합적인 여성의 인권문제의식이 도출된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90년대 후반기 식량난 이후 급격히 열악해진 여성인권을 정리해 본다면:

(1) 북한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문제

- 위생시설 미비: 구금시설에서의 여성인권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구금시설의 위생시설은 말할 것 없이 열악하고, 특히 '여성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극에 달하고 있다.

특별히 성토하고 싶은 것은

○ 상당수의 여성들이 억울하게 각종 통치법과 규정의 위법자로 몰려 수감되었다. 극도의 식량난은 생계를 책임진 여성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하여 북한정권이 불법으로 처리하는 무단장사와 무단이동, 심지어 중국까지 가서 식량을 구해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저들이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여성들을 구금시설로 끌고갔다.

○ 죄아닌 죄로 구금시설에 감금된 여성들에 대하여 초보적인 위생 및 수감조건조차 보장하지 않았다. 본인이 6개월 동안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수감되었을 때 세수를 할 수 있는 수도조차 없는 곳에서 초보적인 여성의 생리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극도의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했다.

- 강제 낙태 강행- 구금시설에서의 강제낙태가 자행되는 것은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당장 저지시켜야 할 반인류적인 행위이다.

여러 기회들에 언급되었지만 중국공안에 의해 강제 북송된 北여성들 가운데서 임신한 여성들을 상대로 잔인무도하게 강제낙태시키는 행위들은 도저히 입으로 올리지 못할 끔찍한 살육만행이다. 그 방법에 있어서 복부구타와 강도 높은 강제노동, 의료수술 등을 통한 강제낙태 등은 짐승도 낯을 붉힐 천인공노할 야만행위이다.

북한정권의 여성들에 대한 후안무치한 반인륜적 감금과 고문, 처벌과 살육행위들은 국제사회와 유엔 등 강력한 지탄과 항의행동들에 의하여 중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인권의 개선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이자 대한민국에 부여된 엄숙한 의무이행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비인륜적 행위에 대해 탈북자들이 치른 옥고와 고통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알리는 활동들을 적극 실시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를 동원한 북한정부에 인권개선에 대한 부단한 압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⑵ 신숙자씨 모녀 구출운동을 통한 북한인권운동 확산

최근 사회에서 들썩거리는 통영의 딸 신숙자씨의 사연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북한 노동당의 공식적인 대남전사인 윤이상씨의 꼬임에 말려든 남편 때문에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는 신숙자씨를 구원하는 것은 납치된 대한민국의 국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과 정부의 당연지사이다.

○ 지난 6.25당시, 북한의 선전에 속아 월북한 수많은 '신숙자씨'들이 이미 북한정권에 의해 대숙청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해방 후 김일성의 위촉장을 받고 눈물 흘리며 납북된 8만여명의 서울대 교수[37]들을 비롯한 남한의 원로 학자들과 고급 인력들이 북한에 끌려갔고 단물만 빼먹고 나중에는 숙청·청산이 되었으며, 현재 잔여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고향과 부모형제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보내고 있다.

○ 긴급구원을 해야 할 사람들은 70년대와 80년대에 끌려간 517명의 납북자들이다. 최성룡 대표를 비롯한 납북어부가족들이 애타게 아버지와 남편을 부르짖고 있으며, 오길남씨 역시 신숙자모녀를 자기와 바꾸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납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정치와 자세태도 등을 우리는 북한사회를 경험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신숙자씨 모녀문제는 우리 탈북자들이 앞장서서 더더욱 소리를 합쳐야 할 절박한 문제이다.

○ 또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정치범들과 국군포로,

37 1960년도 평양의학대학졸업 한 김찬숙의 증언-리병남, 김시창, 임문빈 등 남한출신 10여명의 교수진들이 교단에서 사라져 숙청됨.

이산가족들을 당장 송환해 오는 것이 급선무[38]이다. (국군포로 거주지역,[39] 프라이카우프모델-freikauf[40])

남한은 1993년에 이인모씨를 비롯한 비전향장기수 60명을 조건없이 송환하였다. 2002년,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을 만나 납치자 문제를 자인받고 납치자 일부를 송환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듯이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이런 실리적인 문제를 전환점으로 하여 북한의 납북자 문제와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남한 내에서의 탈북여성의 인권현황

북한주민들은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일생을 보낼 정도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살다보니 인권에 대한 상식과 개념이 전무하다. 한편 인권이 국제적 기준에서 지켜지는 남한사회생활에서 새롭게 살다보니 인권문제에 대해 크게 자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 남한에서의 복지포퓰리즘과 인권을 빙자한 이익집단들의 공익침해와 국가정책에 대한 지나친 매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탈북자들의 거부감을 조성하며 그 와중에 탈북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 한국입국시의 수용시설의 인권문제

○ 발제자께서도 관련기관들의 인권감수성 제고문제를 강조하였지만 인권감수성 제고와 성찰문제는 오늘날 그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

38 신숙자씨 구출 조속(일본의 메구미).

39 북한에는 국군포로 주거지역이 제한되어있는데 저의 주거지역시 평양 추방자, 국군포로 등 북한의 혐오시설에 계시던 분들은 다 운명하시고 현재 5~6명에 불과함.

40 독일정치범 송환방식-현금주고 교환하는 방식.

입국하면 국정원 3개월(조사기간 명목)과 하나원 3개월(주택배정, 주민등록증 기간) 과정을 경유하여 6개월여를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북한사회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감옥임을 감안할 때, 또한 남한입국자들의 70%가 한국으로 오기까지 수차에 걸쳐 재탈북 경험을 가지고 있어 수용생활만 생각해도 심각한 거부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을 한국입국 이후에 조사, 교육 등의 명목으로 6개월씩이나 집단 수용하는 것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를 위해 최소한의 수용생활은 필수적이나 주택배정과 취적, 교육을 위해 수개월씩 집단수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하여 충분히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공무원들의 업무태반, 의식제고 등을 통하여 탈북자조사와 적응교육에서도 혁신적이고 내실있게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⑵ 탈북여성의 사회적인 인권문제

○ 과거 북한의 구금시설과정과 제3국에서의 인신매매, 성착취 경험 등은 다문화가족 여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트라우마(trauma)와 스트레스(stress)를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취업을 통한 조기안정에만 집념하고 있는 정부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심리적 불안과 정신질환은 간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심리치료와 심리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41]이다. 정부와 기관들에서는 아직도 탈북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

○ 북한여성들은 일반 한국인에 비해 연령대에서도 훨씬 추월된 연령선상으로 관찰된다. 이로인해 취업을 비롯한 영역과 입지에서 적지않게 장애요소가 발생한다.

41 이에 대해 본인이 2005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IRCT회의에서 증언.

탈북여성들에 대한 취업문제보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해소를 우선문제로 다루는 인권중심 정책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치료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3

발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현황**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윤상석**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발표 3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현황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현황[1]

I. 서론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으로 이주하는 주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수적 증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편견에 시달리거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곧 북한이탈아동 및 청소년들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통일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로 들어온 이들 중 19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이 약 3천여 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2] 북한이탈 아동 및

1 여기에 서술된 내용은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백혜정, 최우영,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2007).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Ⅱ.)의 일부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 포함되었음을 밝혀둔다.

2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94&bbs=INDX_001&clas_div=A> (검색일: 2011.9.21).

청소년의 수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형태가 다양해진데 기인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초창기에는 남성의 단독 입국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여성입국과 가족을 동반한 다양한 연령층의 입국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층의 입국도 함께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거주했을 당시부터 시작하여 남한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또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 및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이나 교육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채 장기간 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위험을 감수하였으며, 외국공관에 보호요청부터 하나원에 입소하기 전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불편하고 불안한 생활을 지속해야 했었다. 마지막 단계로 국내에 정착한 이후에도 정부 및 민간 기관의 많은 노력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고 또 현재까지도 그러함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료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국내 정착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의 단계별 인권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인권 현황에 대한 분석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수립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권현황

1.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의 현황 및 발생배경

가. 현황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19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이 3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표 1〉). 통일부에서는 탈북주민의 연령대를 10년 단위로 묶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로 규정할 경우 정확한 청소년의 수를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약 3천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면, 북한이탈 청소년은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약 17%에 해당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다.[3]

〈표 1〉 남한 내 연령별 북한이탈주민의 수 (2011년 1월 입국자기준)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누계(명)	793	2,381	5,644	6,575	3,220	989	937	20,539
비율(%)	4	12	27	32	15	5	5	100

출처: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94&bbs=INDX_001&clas_div=A〉(검색일 2011.9.21).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에만 해당될 뿐이며 전체적으로 북한을 이탈한 청소년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하기가 어렵다.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불법체류로써 은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단지 중국 현지에서 탈북

3 윤상석,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과 과제,"『다문화교육연구』, 제2권 2호 (2009), pp. 138~154.

주민지원 민간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의 규모가 10~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 이 수치와 한국 내 북한이탈 청소년의 비율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건데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가 3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9세 이하 북한이탈 아동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 증가할 것이다.

나. 발생 배경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발생배경은 북한이탈주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의 발생 배경은 크게 북한의 내부적 요인과 남한 및 제3국(주로 중국)의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내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 및 식량난의 악화를 들 수 있다.[5] 북한의 매우 심각한 식량난은 북한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식량 및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중국을 오가며 탈북이 시작되었다.[6] 최근 화폐개혁의 실패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면서 탈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조선족과 부분적이나마 교류가 있던 국경인접 지역의 주민들이나 탈북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이들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비판의식이 커지는 경향 역시 탈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목선을 타고 탈북한 이들 중 한 명은 생활이 어려웠지만 아주 곤란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한국의 드라마 등을

4 최의철·서재진·김병로·이금순·임순희·김수암, 『북한인권백서 2001』 (서울: 통일연구원, 2000).

5 위의 책.

6 김강년, "탈북자의 인권침해실태와 보호방안," 『탈북자 문제의 실체적 해부』 (서울: 도서출판 이경, 2006).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진술하였다.[7] 본 연구자가 만난 한 북한이탈 청소년 역시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에 속하였지만 한국 드라마를 통해 남한사회의 풍요와 자유로움을 접하고 부모를 설득하여 남한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현재 북한에는 외부, 특히 남한에 대한 정보가 폭넓게 유입되고 있으며, 이것이 생존을 위한 탈출에서 자유를 위한 탈출로 변화되는데 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탈북을 유인하는 제3국의 요인으로 중국 내 조선족 사회를 들 수 있다. 중국 내 조선족들은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고, 북한이탈주민들과 조선족들 사이에는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어 조선족 사회는 탈북 주민들이 은신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사회적 문제와 겹치면서 저임금 노동이나 인신매매 등을 통한 결혼 등도 탈북자들에게 중국에서의 은신을 가능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탈북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남한 등에서 조선족 사회로 진출한 경우도 드물지 않아 이들의 직·간접적 활동도 중국 조선족 사회 내에서 탈북주민 지원과 보호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8]

마지막으로 탈북을 유도하는 남한의 요인으로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과, 남한의 경제적 성장,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내 잔여 가족에 대한 기획탈북의 시도 등을 들 수 있다.[9] 한국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다양한 정책의 실시를 통해 남한에 입국한 이들의 사회 정착 또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보 및 남한의

---

7 "목선 탈북자 '드라마 보고 한국 동경,'" 『문화일보』, 2011년 9월 20일.

8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북한이탈 청소년종합대책연구 I: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9 임순희·이금순·김수암·최의철, 『북한인권백서 2006』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최의철 외, 『북한인권백서 2001』.

사회·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조선족, 중국체류 남한주민, 언론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면서 북한주민들에게 탈북의 동기를 제공하였다. 남한 내 탈북주민 역시 탈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이들 중 상당수는 정착금과 기타 소득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탈북 및 남한 입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연락방법이 다양화되고 통신의 발달로 북한 내 가족과 직접 통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탈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2.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국내정착 단계

북한이탈아동 및 청소년들의 탈북에서 남한에 정착하기까지의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이용하여 북한과 인접해 있는 중국으로 탈북한 후 중국 내 조선족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동북 3성 지역을 비롯하여 좀 더 넓게는 몽골이나 동남아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한다.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외공관 및 임시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신원확인 후 임시보호조치를 하는 동시에 국내 입국 지원책을 마련한다. 입국 후에는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합동 신문을 거친 후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에 하나원에 입소하여 12주 동안의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 주거 알선 등 정착준비를 지원하고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는 보호담당관을 통하여 거주지, 취업, 신변 보호 등을 받게 되는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후 지원도 받게 된다.

3. 탈북과정의 단계별 인권 현황

한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기간도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권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서도 예외는 없다. 여기서는 북한에서부터 남한에 정착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단계별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권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북과정을 크게 3단계, 즉 북한에서의 생활 단계, 탈북 및 제3국 체류 단계, 남한으로의 입국 및 정착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아동 및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북한에서의 생활 단계

북한사회가 체제의 특수성과 그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 및 식량난을 겪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아동 및 청소년들 역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연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건강에 대한 위협

북한의 식량난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왔으며, 이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발육부진 및 영양실조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럽연합(EU)이 1998년 가을, 북한 내 8개 지역에서 7세 미만의 어린이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인 영양부족으로 인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62%는 발육부진 상태에, 16%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최근에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농업기구 등에 의한 UN 평가가 발표되었는데,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이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하고 지방과 육류 섭취의 부족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같이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특히 도시의 20%, 지방의 40%에 달하는 아동이 발육부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와 연관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9년 아동들의 만성적 영양실조, 급성호흡기증후군이나 설사 등과 같은 아동 질병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44, 45항).[12] 이렇듯 북한의 경제 및 식량난은 북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상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의 영양부족에 따른 신체적 왜소가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예로써, 2001년 북한이탈 아동들의 신장을 같은 연령대의 남한 아동들의 평균 신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최소 3cm에서 최대 30cm까지 차이를 보였다[13]. 하나원에 입소한 만 9세에서 19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남한의 표준 신장 및 체중에 미달하였으며, 이들 중 약 30%는 신장발달 수준이 남한 표준치의 하위 3%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4] 2007년의 연구[15]에서도 대안학교 등에 다니는 북한이탈 청소년 62명(남 37명, 여 25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청소년

10 연합뉴스, 『2000년 북한연감』 (2000).

11 UNCEF, <http://www.unicef.org/infobycountry/korea_58239.html> (검색일: 2011.10.4).

12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9/413/32/PDF/G0941332.pdf?OpenElement> (검색일: 2011.10.10).

13 김윤영, "남한학교 생활과 적응전략," 정병호·전우택·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pp. 218~242.

14 김예영, "북한이탈 아동의 건강상태 평가," 『간호과학』, 제17권 제2호 (2005), pp. 55~63.

15 정효지, "탈북 청소년의 건강위험 실태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2007).

평균 신장은 남성 164㎝, 여성 152.4㎝였으며, 평균 체중은 각각 56.9㎏, 48.6㎏로 남한 청소년에 비해 왜소한 편이었다.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남한의 청소년들이 북한이탈 청소년에 비해 사춘기에 더 빨리 도달하며 이로 인해 성장속도에 차이가 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은 남한 청소년의 평균 신장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 생활에서 식량난으로 인해 성장기 때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가족, 특히 부모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가정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해체 상황은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가족 중 일부는 북한을 탈출하고 일부는 북한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탈북 이전에 북한에서 이미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세쌍둥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기르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시설에 보내져 국가의 관리 하에 양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되어야(7조)"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 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경제 및 식량난은 가족 중 일부가 탈북을 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그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 즉, 부모 중 한 사람의 탈북은 부모간의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아동 및 청소년들이 온전한 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하는 것이다.[16]

16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

또한 임채완[17]은 부모를 잃거나 가족 해체로 북한 내에서 상당기간 유랑생활을 해본 아동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된 탈북 아동의 86% 정도가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 부모에게 의지하여 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탈북 등의 이유로 수감시설에 수용될 경우 그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곳의 시설이 열악할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분리된 이후 부모 소재의 파악이 어려워 부모로부터 영영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 중에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생활하는 이른바 "꽃제비"가 되기도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9년 북한 당국에 거리에서 생활하는 "꽃제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세우도록 권고하였다(64, 65항).[19]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대로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부모와 아동이 분리된 경우 부재중인 가족의 소재에 대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9조)"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처사이다.

⑶ 교육기회의 상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혼란하며, 교육시스템도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탈북 이전 북한생활에서 이미 정규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

과제』(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엄태완,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상에서의 일탈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 연구』, 17권 9호 (2010), pp. 227~252.

17 임채완,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19집 (2001), pp. 53~78.

18 이영환·박수진, "2001~2007 북한 아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북한의 인권: 관점과 개선전략』(경북대 인권과 평화센타·북한인권시민연합 공동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2008), pp. 44~87.

19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9/413/32/PDF/G0941332.pdf?OpenElement> (검색일: 2011.10.10).

남북문화교육통합원[20]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장기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 정상적으로 등교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시작됐다고 한다. 즉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교과서 및 학용품 등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 식량구하기에 나서게 되면서, 학생들은 장기결석을 하게 되고 교사들은 번갈아 가며 출근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에 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뿐 아니라 결석한 교사의 과목도 떠맡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급기야 학생들은 장사하는 교사를 찾으러 시장에 가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청년동맹이 중심이 되어 교사들에게 식량을 마련해 주거나 운동장을 밭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6~98년 당시에는 북한의 인민학교 등교율이 30%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21]

이영환·박수진[22]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교 수업시간을 축소해 가면서까지 어린 학생들이 노동이나 공연준비에 동원되어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양이외 지역의 일반학교에서는 과도하게 걷는 잡부금을 제 때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과서나 학용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당국이 무상교육 및 11년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200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20 남북문화교육통합원,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더불어 무지개 남북문화교육통합원, 2006).

21 윤여상, "중국지역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2호 (2003), pp. 343~364.

22 이영환·박수진, "2001~2007 북한 아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북한의 높은 학업 중단율을 우려하는 지적을 낳기도 하였다(53항).[23] 이러한 실상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치적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28조)"는 원칙을 고수하는 아동권리협약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⑷ 과도한 노동 및 군사교육

앞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잠깐 언급했듯이 북한 내 청소년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 나이에도 군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이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위험하거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32조)"가 있으며, "무력분쟁으로부터 아동을 보호(38조)"해야 한다는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임순희[24]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이 봄, 가을에 동원되어 노동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시간에 협동농장으로 가서 농사의 거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평일 뿐 아니라 휴일이나 방학 중에도 농사일에 동원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를 살펴보아도 중학생 뿐 아니라 7~10세 아동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농사일에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농사뿐 아니라 아편농장 등에서의 노동이 포함되어 아동의 약물중독이 우려되기도 한다.[25]

협동농장에서의 노동 이외에도 도로 포장이나 건설 현장에도 동원되고

23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9/413/32/PDF/G0941332.pdf?OpenElement> (검색일: 2011.10.10).

24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5).

25 이영환·박수진, "2001~2007 북한 아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있으며, 외화벌이나 자원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약초, 도토리, 잣 등을 채집하거나 파지, 고철 등을 수집하여 학교과제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26]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체제 선전과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아리랑 공연'을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씩 강도 높은 훈련 및 연습을 수개월에 걸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러한 모든 노동 행위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임에 틀림없으며, 이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60, 61, 62항).[28]

북한의 학생들은 단순히 강도 높은 노동에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군사교육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권이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중학교 5학년(남한의 경우 중3에 해당) 학생들에게 2주 정도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에 참가하여 군사 교육을 받도록 하며, 그 중 2~3일 정도는 총쏘기 실습도 받도록 한다.[29] 이와 관련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09년 군사교육 및 아동의 조기 군사화에 대해 지적하였다(58, 59항).

⑸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억압

북한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시민으로서 가지는 집회, 종교, 표현 등에 있어서 상당한 권리와 자유가 억압되어 있으며, 특히 탈북과 관련하여 비인도적 처벌이나 고문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보고되었다. 지난 2009년에 작성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30]에서도 이와

26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이영환·박수진, "2001~2007 북한 아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27 "북 요구, 예우 차원서 수용할 게 아니다," 『데일리안』, 2007년 9월 1일.

28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9/413/32/PDF/G0941332.pdf?OpenElement> (검색일: 2011.10.10).

29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30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9/413/32/PDF/G0941332.pdf?OpenElement> (검색일: 2011.10.10.).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32항은 아동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과 관련하여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56, 57항에서도 국경을 넘은 전력이 있거나 타국에서 송환되어 온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문은 역설적으로 북한에서 이러한 비인도적 처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확한 증거 없이 탈북이 의심만 되어도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31] 이처럼 북한의 아동 및 청소년, 특히 탈북과 관련이 되는 경우는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권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군사교육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가정이 해체되어 안정된 가정과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와 자유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체제적 특수성과 경제 및 식량난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나.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체류 단계

탈북을 했다고 해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권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은 주로 중국을 통해 탈북을 감행하며, 이후 제3국으로 가기도 한다.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거의 모든 인권침해 상황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

31 이영환·박수진, "2001~2007 북한 아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의 신분보장 문제는 남북한 및 중국을 비롯한 체류국가들 각자의 입장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규정하며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의 송환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이들은 중국공안의 눈을 피해 은신처에 기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3국에 체류할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북한으로의 송환 위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북한으로의 송환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이 발각되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당하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자들은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북한으로 송환된 경우에는 연령이 어리다 하더라도 탈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은 장기간 구금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조사 이후 구호소로 보내지는데 그곳에서도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된다.[32] 이로 인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중국에서 신분이 노출될까봐 불안해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백혜정 등[33]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만난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실제로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 이상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32 위의 글.

33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신분 노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불안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은 일단 경계를 하고, 마음 놓고 길거리를 다닌 적도 드물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이나 이름은 물론 가족관계도 모두 사실과 다르게 말하도록 교육받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할 때에도 가능한 한 짧게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았다.

신분노출의 두려움으로 인해 행동반경에 제약이 따르다 보니 청소년기의 경험에 제한이 생기기도 하였다. 특히 또래사귀기를 비롯한 인간관계는 물론 여행이나 지역사회 활동과 같은 활동 경험도 거의 없는 등 이들에게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맞는 경험이 거의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37조)"는 물론이거니와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27조)"와 "휴가와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31조)"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⑵ 건강에 대한 위협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이미 북한에 있을 때부터 불충분한 영양섭취로 성장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었으나 제3국으로 탈출한 이후에도 도피 및 은신생활에 따라 여전히 열악한 음식과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필요한 의료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건강과 영양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과정에서의 고생으로 인해 남한에 와서도 여전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호소하는 이들도 상당수이다. 2007년 중국에 체류 중이던 한 북한이탈 청소년은 그 당시 중국에서 자신의 형이 백혈병에 걸렸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34] 북한이탈 청소년들

이 현지 활동단체와 연결된 경우에는 이들의 의료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의약품을 지급받고는 있었으나 그 이상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의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탈북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외상 문제로 인한 정신건강 역시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까지 하나원 입소자의 약 74%(1,498명 중 1,108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의 질환으로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신적 문제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탈북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외상에 대한 조사 결과,[35]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식량부족이나 심한 추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63.8%)",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고문당하거나 공개처형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50.7%)",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식량을 구하러 나간 후 소식을 몰라 몹시 불안했던 적이 있다(53%)", "탈북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 경비병에게 검열을 받아 몹시 긴장한 적이 있다(62.9%)", "탈북 준비나 과정 중에 발각될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다(56.5%)" 등이다. 또한 조영아·김연희·김현아[36]의 연구에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보다 혼자 탈북한 무연고 청소년들이 탈북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탈북과정

34 위의 책.

35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북한이탈 청소년종합대책연구 I: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36 조영아·김연희·김현아,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7호 (2011), pp. 33~57.

중에서 이러한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불안 및 비행,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심리건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37]

이러한 상황들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이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더불어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건강에 대한 권리(24, 25조)"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등으로 인해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39조)가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⑶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은 탈북 이전에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지만 탈북이나 제3국 체류 과정에서 또한 가족 해체를 경험하기도 한다. 가족 중 일부와 함께, 또는 혼자서 북한을 떠나 제3국에 머무르는 동안 생존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거나 부모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38] 백혜정 등[39]의 연구에서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 200명(무응답자 5명 포함) 중 약 36%(71명)가 가족 중 일부만 함께 산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경우도 약 17%(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여상[40]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탈북한 경우는 응답자 중 30%(12명)에 불과했으며, 친지나 친구, 형제와 함께(38%, 15명) 탈북하거나 혼자서(20%, 8명) 탈북하는

37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38 최명선·최태산·강지희, "탈북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모색," 『놀이치료연구』, 제12권 9호 (2006), pp. 23~34.

39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북한이탈 청소년종합대책연구 I: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40 윤여상, "중국지역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과 분리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낯선 땅에서의 도피생활이라는 그들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일반 아동 및 청소년들이나 성인이 겪는 어려움의 몇 배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지원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는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선다.

물론 부모와 함께 탈북했다고 해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이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충분히 받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그렇듯이 이들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인 불안정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타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의식이나 애정 정도를 낮추기도 하고, 탈북과정에서 한 부모 가정, 부모의 재혼 등이 발생하면서 부모로부터의 방임과 유기를 경험하기도 한다.[41] 심한 경우에는 자녀들을 매매한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2] 먹고 살 길이 없어 중국사람 집에 아이를 보내려다 사돈의 꾸지람을 듣고 포기한 탈북여성이나 5세, 8세, 11세의 아이 셋을 모두 한족과 조선족의 집으로 각각 보낸 탈북여성의 경우[43]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 매매나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35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4) 교육기회의 상실

탈북 이후 제3국에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이 정규교육기회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소학교에서 초중학교까지 9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의

41 최명선·최태산·강지희, "탈북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모색."
42 윤여상, "중국지역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43 좋은벗들(편),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서울: 정토출판, 1999).

대부분은 탈북자 단속과 체포의 위협에 시달리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백혜정 등[44]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호구(신분증)가 없으면 중등학교 이상 다니기가 어렵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내면 중등학교의 진학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다니는 중국 학교는 공립이므로 원칙적으로 학비가 면제되는데 이들은 신분증이 없으므로 편법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한 외국 활동단체의 주선으로 전직 소학교 교사출신 가정교사에게 개인교습을 받고 있는 한 청소년은 면접 당시 주로 중국어와 수학을 배우고 있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 중에는 그나마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은신처에서 생활하면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을 제공하는 곳 중에는 남한의 교과서와 동화책을 제공해 주는 곳도 있지만 성경과 기독교 관련 서적만을 읽도록 하는 곳들도 있어 이것이 문제시되기도 하였다.[45] 또한 일반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한다 하여도 학교와 같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보니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46] 이러한 모든 상황은 교육에 대한 이들의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가 보장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일반 아동 및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44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45 Chung, Byung-Ho, "Living dangerously in two worlds: The risks and tactic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childern in China," *Korea Journal,* Vol. 43, No. 3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3). pp. 191~211,

46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⑸ 인신매매의 위협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 정설이다. 전체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중국에서 여성에 대한 수요가 남성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도시의 산업화와 그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인해 결혼할 여성이 부족한 농촌 지역이나 유흥가에서 북한이탈 여성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47]

문숙재·김지희·이명근[48]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 후 중국인에게 붙잡힌 경험이 있는 이들(전체의 23.7%) 중 중국인 남자에게 팔려가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8%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여성은 주로 결혼이라는 형태를 통해 매매되는데 당시 결혼여부와도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여성들 중에는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매매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예 북한에서부터 인신매매되어 미리 연계된 중국인에게 넘겨지는 경우나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근처를 지키고 있던 인신매매꾼들에게 붙잡혀 매매되는 경우도 있었다.[49]

매매를 통해 결혼하게 된 북한이탈 여성들은 중국인 남편과 안정된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50] 감금과 폭행,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임신, 질병, 노동착취, 반복되는 매매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51] 이렇게 이들의 상황이 열악한 이유로는 이들의

47 김인성, “탈북자 현황분석,”『민족연구』, 제14권 (2005), pp. 6~34.

48 문숙재·김지희·이명근,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여성들을 중심으로,”『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2000), pp. 137~152.

49 임채완,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50 문숙재·김지희·이명근,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여성들을 중심으로.”

51 김인성, “탈북자 현황분석.”

결혼이 중국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혼대상자인 남성 중 대다수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최하위층인 사람들로 북한이탈 여성을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하나의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52]

이러한 인신매매는 비단 성인여성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탈 여성들이 경험하는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는 어린 소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53] 특히 보호자가 없는 북한이탈 소녀들이 국내외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신만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보니 유흥가의 접대부나 성노리개 등으로 전락하여 성폭력과 성적 착취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조선족에 의해 인근의 50대 후반 중국남자와 동거하다 탈출하였으나 결국 생계를 위해 도심지역 유흥가로 갈 수 밖에 없었던 15세 탈북 소녀의 사례가 보고되기 하였고,[54] 13세에 탈북한 후 마흔이 다 된 남자에게 팔려 16세에 두 살짜리 아이의 엄마가 된 소녀의 사례도 보고되었다.[55]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신매매의 현장에 청소년까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 여자 청소년들의 인신매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에 해당하는 '아동이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를 명백히 위반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성인과 또 다르게 신체적 미성숙과 성지식의 부족으로 임신과 낙태를 거듭하고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피폐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52 임채완,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53 윤여상, "중국지역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54 위의 글.
55 남북문화교육통합원,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과제』.

다. 남한으로의 입국 및 정착 단계

남한에 입국하여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이제 남한사회의 시민으로 적응하며 생활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체제와 문화, 생활습관 등에서의 차이로 인해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또한 정부차원이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들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든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다가가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분노출에 따른 편견과 차별

6·25전쟁과 오랜 분단국가에서 반공 교육을 받으며 생활해 온 일반사람들은 북한사람들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56] 이러한 감정은 북한이탈 주민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나타난다. 즉 독재 체제와 경제난, 목숨을 건 탈출 등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한에 정착하여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동포이자 언제라도 우리를 배신하고 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한편으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은 남한에서 생활할 때에 자신이 북한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분적으로 앞서 말한 북한출신 시민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이중적 태도, 그리고 부정적 편견과 그에 따른 차별적 행동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견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이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56 전효관,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지," 조한혜정·이우영(편), 『탈분단 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 모색』 (서울: 삼인, 2000).

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주변에서 이를 지켜주는 것이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에 의한 신분 공개가 이루어져 곤란을 겪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에게만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데 그 교사의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해 급우들까지 모두 알게 되는 상황 등이 그것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분 노출에 의해 학교나 지역사회, 근로환경에서 실제로 편견과 차별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보고된다. 북한출신임을 알고 시비를 걸거나 따돌리는 급우들, 북한출신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곤란한 질문을 하는 교사, 일반 판매직에서 남한 출신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 등이 그 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하여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야 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통해 차별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에 나타났듯이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태생,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⑵ 통합교육의 어려움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일반 정규학교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중도 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탈 학생들의 정규학교 중도탈락률은 초등학교 0.9%, 중학교 8.7%, 고등학교 9.4%, 전체 4.9%로 일반 중고등학생의 평균 탈락률(1.4%)에 비해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신분의 노출과 그로 인한 편견 및 차별과도 맞물리는 것이다. 즉 중도탈락률이 높은 이유는 학교나 사회적 제도가 학습공백이나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해 학교 적응이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윤나[57]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부정책이 남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에 있으며, 이들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이들의 학습공백 기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관점의 대응정책보다는 현안 위주의 단기대응책으로 남한 학교교육적응을 위한 학력인정 및 학비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학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디딤돌 학교로서의 한겨레 학교를 시작하였지만, 현재 이 학교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하나의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학교 성격의 변질 역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끌어안고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기보다는 이들을 따로 떼어 관리하고 규제하는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통합교육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북한이탈아동 및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존의 남한사람들 역시 이들에 대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인 적응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장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통합하고 어울려 지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⑶ 취약점 보완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의 미비

북한 및 제3국에서의 열악한 생활로 인해 충족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상황에서도 후유증으로 남아 여전히 취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교육이 그

57 김윤나, "시민청소년관점에서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 및 서비스 방향,"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1호 (2010), pp. 27~46.

대표적인 예이다. 교육에 있어서 몇 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아동 및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정규학교에 진학한 이후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해 부적응자로 남거나 정규학교에서 탈락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이 정규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체계적 지원은 교육적 문제 뿐 아니다. 심리적 외상, 건강상의 문제, 가족으로부터 분리 등 다양한 문제를 겪었고 그에 대한 치유의 과정이 거의 없는 채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갖게 된다. 선행 과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그 결과 사회적 부적응자 내지는 이등시민으로 자리잡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착금 지원, 주택지원, 취업지원, 사회보장지원 등 현행 지원정책들은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책에 지나지 않으며, 남한에 오기 이전에 이들이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경감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Ⅲ. 결론

기존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하는 인권침해를 크게 세 단계-북한에서의 생활 단계,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체류단계, 남한입국의 정착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에서의 생활단계에서는 건강에 대한 위협,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교육기회의 상실, 과도한 노동 및 군사교육의 실시,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억압 등의 인권침해 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폐쇄적인 사회체제와 그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제3국에서의 인권침해상황은 북한으로의 송환위협, 건강에 대한 위협,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교육기회의 상실, 인신

매매의 위협 등이었는데 이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규정짓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에서 이들이 겪는 가장 주요한 인권침해 상황은 신분노출에 따른 편견과 차별, 일반학교로부터의 분리, 취약점 보완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의 미비 등인데 이는 주류집단과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해 상호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모든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은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처한 상황적 특수성이 곧 이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합리화가 될 수는 없으며, 관련 국가들의 적극적인 공조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이들의 상황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나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개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 내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가장 실천가능한 상황에 있으므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북한 및 제3국에서의 생활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한에 거주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강년. "탈북자의 인권침해실태와 보호방안." 한국통일전략학회 편. 『탈북자 문제의 실체적 해부』. 서울: 도서출판 이경, 2006.

김예영. "북한이탈 아동의 건강상태 평가." 『간호과학』. 제17권 제2호, 2005.

김윤나. "시민청소년관점에서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 및 서비스 방향."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1호, 2010.

김윤영. "남한학교 생활과 적응전략."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김인성. "탈북자 현황분석." 『민족연구』. 제14권, 2005.

남북문화교육통합원.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더불어 무지개 남북문화교육통합, 2006.

문숙재·김지희·이명근.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2000.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북한이탈 청소년종합대책연구 I: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채과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엄태완.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상에서의 일탈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7권 9호, 2010.

연합뉴스. 『2000년 북한연감』. 서울: 연합뉴스, 2000.

윤상석.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과 과제." 『다문화교육연구』. 제2권 2호, 2009.

윤여상. "중국지역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2호, 2003.

이영환·박수진. "2001~2007 북한 아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북한의 인권: 관점과 개선전략』. 경북대 인권과 평화센타·북한인권시민연합 공동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2008.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임순희·이금순·김수암·최의철. 『북한인권백서 2006』.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임채완.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19집, 2001.

전효관.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지." 조한혜정·이우영(편). 『탈분단 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 모색』. 서울: 삼인, 2000.

정효지. "탈북 청소년의 건강위험 실태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2007.

조영아·김연희·김현아.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7호, 2011.

좋은벗들(편).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서울: 정토출판, 1999.

최명선·최태산·강지희. "탈북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놀이치료연구』. 제12권 9호, 2006.

최의철·서재진·김병로·이금순·임순희·김수암. 『북한인권백서 2001』. 서울: 통일연구원, 2000.

Chung, Byung-Ho. "Living dangerously in two worlds: The risks and tactic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in China." *Korea Journal*. Vol. 43. No.3.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3.

『데일리안』. "북 요구, 예우 차원서 수용할 게 아니다." 2007년 9월 27일.

『문화일보』. "목선 탈북자 "드라마 보고 한국 동경." 2011년 9월 20일.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9/413/32/PDF/G0941332.pdf?OpenElement〉.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94&bbs=INDX_001&clas_div=A〉.

〈http://www.unicef.org/infobycountry/korea_58239.html〉.

〈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

토론

윤상석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1. 대북지원단체의 에피소드: 구충제는 No! 영양증진제 Yes

남북한 어린이들의 교류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두유공장 지원, 소아병원 건립 등을 추진해 왔던 한 NGO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북한 상황을 고려해 구충제만 제때 보급되어도 이를 상당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북한 당국과 구충제 지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는 "우리 공화국에는 그런 것이 필요없다"며 지원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이에 NGO 관계자들은 고심 끝에 다시 협상테이블에서 "이것은 어린이 영양증진제다"라고 이야기했고 북한 당국은 알면서 모르는 척 북한주민 전부가 복용할 수 있을만큼의 '영양증진제'를 받았다고 한다. 단적인 사례지만 이를 통해 북한의 아동청소년들의 상황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이중적 태도를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으리라 본다.

2. 0.1%의 북한이탈주민과 99.9% 북한주민과의 만남

2011년 11월 현재 약 22,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해 있다. 최근 북한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2010년 기준 통계청은 북한 인구를 약 2,4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북한 인구의 0.1%도 채 안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천명하는 통일이란, 단순한 영토의 통일, 경제적 통합, 정치적 합의 뿐 아니라 남북한주민이 전면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99.9%의 북한주민과의 만남이 통일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통일 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은 곧 미래 한반도 통일의 모습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에 '먼저 온 미래'라고 볼 수 있다.

3.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이 빚어낸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첫째, 북한에서 겪은 기아의 고난과 가족의 생이별의 경험, 탈북 과정과 중국 체류 기간에 겪는 극심한 공포 등이 근본적 원인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는 것이다. 또 다른 불안의 원인은 낯선 남한 문화로 이주해 와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비록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는 제3국 상황보다 여러모로 환경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살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공부를 따라가고 진학하고 장차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등 미지의 상황에 대한 불안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다.

둘째, 일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의 평균적 또래들에 비하여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공격성은 그들이 겪어내야 했던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학습한 결과이기도 하고, 좌절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심한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녀의 성역할은 그 중 가장 현저한 갈등을 보이는 분야 중의 하나다. 성역할의 변화와 적응은 본인의 내재된 성격이나 가치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의 수많은 국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남한에서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생활적응 및 스트레스에도 반영될 수 있다.

넷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고립된 생활경험 때문에 자아통제력이 아직 덜 발달하여 그동안에 겪은 고통스런 경험과 상처가 거짓말, 도벽 등 여러 가지 행동상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동기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심리상담 등을 통해 교정해 줄 필요가 있다.

재북 당시 어린나이에 경험한 장기간의 영양부족과 가족해체, 이후 북한탈출과 은신과정에서의 긴장, 남한생활에서의 부적응 등 힘든 경험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마음에 많은 상흔을 남겼다. 키와 용모가 왜소함에서 느끼는 심리적 위축은 특히 청소년기에 더욱 심각한 상처가 된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자신의 존재자체를 숨기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건강한 성장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4.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짐작케하는 사진

<수해 복구에 나선 북한주민 모습>

<복구 작업에는 아이들도 참여한다 >

<중국에 은신 중 아이가 그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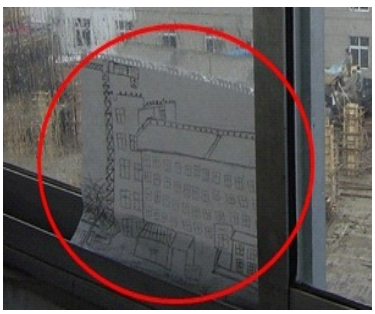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을 담았다>

4

발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할 이유와 근거**

박효종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발표 4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할 이유와 근거

박효종 (서울대학교 교수)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할 이유와 근거

Ⅰ. 문제의 제기

북한의 문제와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민족의 기구한 운명을 생각하게 된다.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은 됐지만, 일본군 무장해제를 이유로 분단이 되면서 한반도에는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다. 대한민국이 민주정(民主政)을 수립해 자유와 번영의 씨앗을 뿌린 데 비해 북한은 전제정(專制政)을 수립해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처럼 별개의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당시는 2차대전 이후 사회주의가 유행하던 시절이라 북한은 착취와 특권이 없는 지상의 낙원을 만드는 줄 알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출발점이 좋았다. 일제가 건설해 놓은 산업기반이 튼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무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다던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다.

이제 광복 66년이 되면서 남북한 정부의 성적표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좋은 열매를 맺은 기적의 나라로, 북한은 나쁜 열매를 맺은 최악의 나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차마 눈뜨

고 볼 수 없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참상이다. 북한의 폭정(暴政)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피난 온 탈북자만 해도 2만 명이다. 또 북한에 남아 있는 부지기수의 주민들이 폭정 아래서 시름에 겨워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고단한 삶의 문제를 넘어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을 누가 도와야 하나, 또 어떻게 도와야 하나. 미국인들이 도와야 하나, 아니면 유럽인들이 도와야 하나. 북한주민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민족 사랑의 진위가 달린 절체절명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심각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을 돕는 것은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라는 생각 말이다. 그래서 쌀과 비료를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인간이란 빵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다. 품위를 갖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북한주민을 돕는 문제도 그들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신적 차원까지 포함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온전해진다.

Ⅱ. 북한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북한은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의 나라임에 틀림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서도 3대째 세습을 하고 있고 '우리식 사회주의'라면서도 군대를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하고 있다. 또 '주체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자립은 하지 못한채 외부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앨리스도 울고 갈 '이상한 나라'다 보니 북한을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갖가지 비유를 동원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비유적 접근을 하다 보면 자칫 북한체제의 사악한 실체를 놓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만수대의사당은 우리 국회의사당에 해당되고 조선노동당은 한국의 집권여당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식이 그것이다. 심지어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가문에 태어나면 왕자가 되는 것과 같고, 미국 부시 가문의 부자(父子)가 대통령직을 맡았던 이치와 유사하다는 식의 강변도 나오는 판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맥락이 전혀 다른, 그야말로 생뚱맞은 비교다. 모르고 말했다면 순진한 발상이고, 알고도 말했다면 비열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알만한 사람들이 진실을 오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믿게 만든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황당한 비유적 표현을 진정한 실체로 받아들일 때, 종북(從北)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북한은 한마디로 전제정(專制政)의 나라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만수대의사당이 우리의 국회의사당과 같을 수 없고, 그들의 3대 세습은 영국왕가의 세습과 같은 것이 아닌 이유다. 또 그들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인민의 행복이 나올 수 없고, 그들의 3대 세습이 절대왕조의 세습과 닮은 꼴이 되는 이유라고 하겠다.

흔히 북한을 두고 '불량국가' 혹은 '실패한 국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은 어디까지나 전체주의 전제국가이다. 1980년대 말 동유럽과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1인 절대지배, 일당독재, 관제 이데올로기, 혹독한 감시체제도 붕괴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전체주의의 통치가 아직도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는 곳이 북한이다.

전제정의 특징은 공적·사적 영역 할 것 없이 절대권력을 휘둘러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싶으면 가둘 수 있는 무소불위의 지배욕에 있다. 북한의 세습은 바로 이런 전제정의 본질적 특성에서 나온 것일 뿐, 미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자유선거에 의해서 각각 대통령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하기 위해 대거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사상 처음으로 '은둔의 왕국'에서 생중계를 했다고 하여 민주사회에서 귀빈들의 축복

속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의미의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자신을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가장 해괴한 것이 '공화국'이라는 단어다. 북한은 과연 공화국인가. 공화국은 일찍이 로마의 키케로가 지적한 대로 '레즈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온 말이다. 나라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국민 전체의 공유물이라는 의미다. 지금 북한은 누가 뭐래도 김일성 일가의 것이다. 김일성 가문이 아니면 누구도 통치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나라를 두고 '공화국'이라고 하니, 이처럼 지독한 언어의 타락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태도이다. 좌파진보진영 일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을 보노라면, 과연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지성과 상식이 살아 숨쉬고 있나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북한을 두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같은 데서나 일어날만한 불가사의한 일을 보며 "정상"이라고 한다면, 지성의 지체현상이 아닌가.

이런 종북주의자들의 문제는 과잉 민족주의에 빠져 한국과 북한, 혹은 공화정과 전제정 사이에 같지도 않은 것을 같다고 말하는 데 있다. 통치자가 있는 것은 똑같지만, 제한된 임기와 한정된 권력의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는 것과 죽을 때까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국방위원장이 군림하는 것은 다르다. 지금은 북한을 보면서 민주국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지, 같은 것이 있다고 강변할 때가 아니다. 고(故) 황장엽 선생은 김정일이 파티 때 자신은 물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바로 그런 것이 전제정의 맨얼굴이 아니겠는가.

Ⅲ. 전제정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거지로 변장했다는 바그다드의 왕, 칼리프 하룬 알 라시드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오고 있다. 절대권력 주위에 몰려든 아첨꾼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기발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방도가 없었기에 거지로 위장하여 민정을 살핀 것이다. 하룬은 자신의 아내의 불륜을 목격한 후부터 여성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고 드디어 세헤라자데까지 처형하려 했으나, 결국엔 그녀와 결혼에 이르게 된 바로 그 『천일야화』로 유명한 왕이다. 세헤라자데는 천일동안 밤마다 너무나도 매혹적인 이야기로 왕을 감탄시켜 마침내 자신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보시키고 하룬과 결혼하게 된다.

이 이야기야말로 이성과 설득 및 동의보다는 공포와 폭압에 의해 유지되며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독재자의 명령과 지시 및 복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권위체제, 즉 전제정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전제주의적 통치질서에서 질서의 궁극적 원리는 전제군주, 개인자신의 성향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전제정이라고 해서 정의(正義)나 법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무규범의 질서 체제는 아니다. 정의를 규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정치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나름대로의 법과 규칙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임의성'과 '폭압성'이 통치의 유기적 특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군주의 시대'가 종식된 지금 전제정은 사라졌는가.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성과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눈을 떴기 때문에 잔인한 이집트의 파라오나 로마의 칼리굴라, 네로 등에서 연상되는 광기어린 황제들과 같은 전제군주에 대해 혐오감을 내면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대에서 전제적 권력을 향한, 폭군의 '지배욕(libido dominandi)'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위장이 필요했다.

그런가하면 절망감에 젖은 일부 국가의 구성원들은 그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상형(理想型)'이라는 매혹적인 형태로 다가온 전제정의 마법과 주술에 현혹되기도 하였다. 20세기에 스탈린이나 히틀러가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얻은 경우야말로 바로 이와 같은 사례가 아니겠는가. 이런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전제정의 가능성이 시공간상으로 결코 먼 과거나 다른 지역만의 일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전제정의 방식으로 통치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통치방식을 보면, 마치 정신병원에 사는 것과 같이 전제정이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고통이나 죽음을 강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에 주목해보면, 대한민국이 건국초에 자유와 민주주의, 공화정을 정치적 이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것은 단순한 절차민주주의 국가의 수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공공의 일', 즉 공공재(public goods)의 문제를 관리할 평범한 권력체의 구축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존재로서로 의사소통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합의나 설득에 의해 결정하는 정치체를 만들었다는 뜻이 배어있다.

이것을 아우르는 화두가 바로 '자유'다. '자유'의 개념에는 이처럼 중차대한 의미가 배어있는 만큼, '자유주의(liberalism)'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불려지는 진부한 범주나 혹은 '사회주의(socialism)'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대비되는, 이른바 '안티테제'의 개념으로서 이해하기 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중차대한 정치적 이상(理想)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자유라는 이상은 로마의 신 '리벨(Libertas)'의 이름을 딴 '자유(liberty)', 혹은 노예가 아니었던 가정경제의 주인을 지칭한 독일어에서 유래된 '프리덤(freedom)'이라고 불렀던 현상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개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무엇보다도 '자유인(自由人)'이라고 부를 때 함의하는 것처럼, '자기 정체성(self-

identity)'을 확보하는 용어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부를 때는 단순히 '지금·여기서' 우연한 계기에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자유를 자신의 존재이유로 삼는 사람으로서 자유와 자율을 빼앗긴 사람, 즉 '노예'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라고 부르는 경우를 보면 이점이 뚜렷해진다. 우연히 식단을 식물성 위주로 짜는 사람을 말하기 보다는 채식을 생활철학으로 사는 사람을 지칭함으로써 '육식주의자'와는 사뭇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부각시키는데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군주의 권위보다 시민들의 평등한 결정권이 중심이 된 민주공화정 헌법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면, '자유'라는 용어를 붙이는 방식이다. 그것의 가장 큰 의미는 '동의와 설득에 의한 지배'를 '전제정의 지배'와 구분하는데 있다.

서구의 민주국가들이 소련이나 중국 등의 공산당 전제통치에 대항해 그 자신을 '자유세계'라고 부르면서 호소했던 개념이야말로 바로 이런 범주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전제통치와 구분하여 스스로를 '자유국가'라고 부를 때 함의되는 의미도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체성 부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정의 헌법이다.

물론 민주공화정이라고 해서 자유의 훼손이나 왜곡, 권위주의, 억압과 같은 저질스러운 것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50년대 말과 70년대 중반 및 80년대 초의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민주주의의 왜곡'이나 '자유의 결핍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단호했다. 북한의 전제정과 같은 노예상태의 통치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Ⅳ. 전체주의

고대 그리스인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른 민족에 비해 매우 독특한 정치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비상한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자신들의 민주적인 정치양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인들은 백성이 통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관행을 경멸했다. 그리스인들은 이집트나 페르시아와 같은 거대한 오리엔트제국의 웅장한 문화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통치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냉소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통치자앞에 부복(俯伏)하여 경배하는 관행은 시민과 통치자들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용인하기 힘든 불평등의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피통치자가 통치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에 대해 여전히 동일한 태생적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종교인들의 태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는 행위에는 인간과 신 사이의 간극(間隙)과 괴리를 확인하게 만드는 상징적 의미가 두드러질 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음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용인하기 힘든 불평등 관계'에 대하여 설명할 때 종종 '지배'를 뜻하는 라틴어 'dominatio'에서 나온 영어의 'domin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스어의 'despotes'나 라틴어의 'dominus', 이 두 단어는 한결같이 노예에 대하여 노예주가 자의로 휘두르는 절대적 의미의 권력과 권위를 함의해왔다. 그러나 그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로마 시대의 비상대권을 의미했던 'dictator'과는 다른 '일상적 정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독재정부(dictatorship)'라는 단어나 '전체주의(totalitarianism)'라는 신조어(新造語)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권력현상에 대한 인간의 실존의식에서 위압적인 지배라는 공포스러운 느낌의 현저함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제정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녕을 주겠다며 휘두르는 통치자의 무제한적인 권력에 대하여 법적으로나 제도적, 관행적으로 비판이나 반론을 정당한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입법권을 가진 의회도 없고 반대파도 없으며, 자유언론이나 독립된 사법기구도 존재하지 않고 권력의 탐욕으로부터 법에 의해 보장받는 사유재산도 없다. 설사 의회나 언론, 사법기구가 있다고 해도 실체는 없고 이름뿐인 '유명론'에 의하여 압도될 뿐이다. 전제군주의 명령과 지시 이외에 토론과 설득, 합의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고 전제군주의 뜻과는 다른 어떤 공공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20세기에 출현한 대표적인 전제정이 바로 '전체주의' 개념이다. '전체주의(totalitarianism)'라는 용어는 1920년대 베니토 무쏠리니(Benito Mussolini)가 한 연설에서 "전체주의국가(lo stato totalitario)"와 "우리들의 가차없는 전체적 의지(la nostrae torice volunta totalitaria)"를 언급함으로써 대중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어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고 냉전이 전개된 이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군국주의와 공산주의 양자를 지칭하는 동시에 그것들과 이전의 전제정의 형태들을 구분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 한나 아렌트(Hanna Arendt)는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유형의 정치체제를 탄생시켰으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과 기준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독보적이며 특출한 사상가였다. 그녀의 주장이래 역사가들과 정치학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독재(dictatorship), 절대주의(absolutism), 절대권력(autocracy), 집정제(praetorianism), 술탄제(sultanism), 세습제(patrimonialism)를 비롯한 다른 애매모호한 정치체제유형들에 관해서도 논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체주의 개념은 일반사람들의 인식속에 '현대판 전제정'이라는 공고한 형태로 각인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20세기에 와서 절대권력과 전제정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파시즘과 나치즘, 공산주의 등,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시도들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완벽한 사회를 구축하고자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시험되는 거대한 정치적 실험실을 형성했다. 만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공산주의가 파시즘과 함께 패배했더라면, '전체주의'라는 용어는 잊혀졌거나 아니면 역사적 유물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에트 공산주의는 그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번창했기 때문에 소련제국이 극단적인 전제정이라는 사실로 인해 이 용어가 유용하게 보였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에서 작동해왔던 정치제도에 관한 한, "전체주의냐, 아니면 민주주의냐"하는 이분법적 구분에 익숙하다.

물론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붕괴와 더불어 그러한 행복추구의 야심찬 계획들이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또 지금은 전제정에 대한 반감과 인권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제정치 자체는 하나의 논제, 혹은 공인된 분석용어로 간주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전제정에 관한 분석은 기껏해야 인권운동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나 '프리덤 하우스'의 발간물들을 뒤져보면, 전제정권의 인권유린에 관한 각종 기록물들로 충만하다. 이런 단체들은 현대적 전제정의 본질 탐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고문, 자의적 체포, 상이한 의견을 가진 집단의 억압, 검열 등과 같은 특수한 인권남용사례들을 고발하고 퇴치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둔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며 또 중요하다. 하지만 정교하고 상이한 형태의 현대적 전제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거나 또는 특정한 전제정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데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불량국가(rogue states)'나 '실패한 국가(failed states)', 또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체제(illiberal democracy)'와 같은 새로운 개념과 용어들이 새로 등장했다.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이 명칭들은 그런 국가들을 도덕적으로나 전략적으

로 구별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지도 않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분석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다. 20세기를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다소 단순하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대의 근본적 정치문제를 "전체주의냐 민주주의냐"라는 이분법적 범주로 파악한 시도의 간명함과 명쾌함의 매력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이분법적 패러다임은 진지한 정치학적 분석과 공적 수사학의 목적에 다같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었던 구분방식이다. 분명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일단 '전체주의'라는 개념이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기술하는데 있어 적절하다는 점을 십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쿠야마(F. Fukuyama)의 지적처럼, 이른바 '역사의 종언(end of history)'이 도래함에 따라 한 때 '전체주의'로 지칭되었던 현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도 함께 인식해야할 것이다. 물론 전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혹시 중국이나 쿠바에 대해서 그 용어는 어느 수준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전체주의의 주요 통치방식들, 즉 일인절대지배, 일당독재, 관제이데올로기, 냉혹한 감시체제가 붕괴했으며, 그 자리에 자기자신의 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끼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국가들을 위협했던 흔적들로 얼룩진 전제정권의 지도를 달랑 한 장 남겨놓았을 뿐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북한은 그 용어의 망령같은 형태가 아직도 무서운 힘으로 현존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민주공화정과 전제정을 구분하는 일이 한반도에서는 분석적으로 의미있는 작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자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할 때, '작은 정부'니 '야경국가'니 '복지국가'니 하는 논쟁에 몰입하기보다 전제정이나 노예상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음미해야할 것이다.

Ⅴ. 북한인권법제정, 참으로 시급하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은 곧 문명의 시작이었다. 인간이 파리 목숨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바람이 불면 납작 엎드리는 풀잎처럼 살아서도 안 되며, 인간이 인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종처럼 사는 것은 야만이라고 규정한 것이 문명이다. 물론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오랫동안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여자나 아이들도 온전한 인간이 되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도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계몽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만 나오면 좌우로 갈라져 홍역을 앓는 것은 유감이다. 종북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건 예상할 수 있다고 해도 진보주의자를 자부하는 사람들까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얀마의 인권을 거론하는 데는 이론(異論)이 없는데, 왜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면 쟁점이 되는 것인가.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보라. 통치자와 체제에 대해 단 한마디의 비판을 했다는 죄목으로 일생 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일찍이 시시포스는 신들을 속인 죄로 무거운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옮기는 천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상의 통치자 비판이 신들을 속인 죄보다 엄중한 죄란 말인가. 그들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대명천지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 우리라도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픔과 원통함을 대변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큰소리로 떠들어 봐야 남북관계도 나빠지고 북한주민들은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북한인권에 대해서 침묵한 대가로 얻은 게 무엇인가. 북한인권이 좋아졌나. 남북관계가 좋아졌나. 둘 다 아니다.

지금은 '동물권'까지 거론하는 세상이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많은 소와 돼지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소·돼지들이 비록 이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통은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그들에게 다짜고짜로 죽음의 고통을 강요하니, 그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가. 하물며 인간이랴. 불의한 제도 아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비굴함과 모욕을 강요받으며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북한인권이라고 해서 무슨 '사회권'이나 복지권과 같은 거창한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이라면 구제역 걸린 소나 돼지처럼 부조리하게 죽어가는 운명과 조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또 그것을 이방인이 아닌 동족의 정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이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통일의 진정성이나 평화를 위한 슬기로움보다 지성의 비겁함과 동족애의 빈곤을 의미할 뿐이다. 북한의 인권을 외치는 것은 결코 골수 반공주의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동족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민족애의 발로다. 우리가 북한주민들을 동족의 마음으로 껴안는다면 쌀과 비료를 주는 일 못지않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품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고통이나 눈물은 도덕적 호소력을 지닌다.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어린아이 곁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으나, 울고 있는 어린아이 곁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 울음소리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끄는 도덕적 호소력이 배어 있지 않은가. 지금 북한주민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저 소리를 들어보라. 적어도 동족이라면 그 소리 없는 아우성에 응답하는 게 도리일 터다.

Ⅵ. 결어

북한인권법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가 공연히 북한을 자극해서 무엇 하나라는 반문이다. 물론 공연히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절박하고 정당한 이유라면 북한을 자극하는 일도 무릅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절박하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결코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테렌티우스는 플라우투스와 더불어 지금까지 작품이 전해지고 있는 로마의 희극시인 중 한명이다. 그는 기원전 195년에 태어났다 죽은 해는 159년이다. 그가 쓴 희극은 여섯 편이 남아있다. 그 중 하나가 『자학자』다. 여기서 크레메스라는 사람이 말한다.

"나는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에 관한 것 가운데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Homo sum et nihil humanum a me alienum puto)."

이것은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의 대사에서 인용되기도 했다. 세네카 역시 이 말을 자신의 편지에 인용했다. 누군가 사랑에 빠졌다면 그 감정에서 자신도 예외는 아니며, 또 누군가 어떤 이유로 돌팔매를 맞는다면 자신 역시 그 돌팔매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에 대한 호소는 단순히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다. 북한인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인 까닭이다. 우리 인간은 어디의 누구를 막론하고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가난과 부유함을 떠나, 삶의 옹색함과 넉넉함을 떠나 인간으로서 품위를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찍이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는 쓰레기통에서 살았다. 그래도 그에겐 알렉산더 대왕의 다가옴을 거절할 만큼의 품위가 있었다. 지금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에겐 디오게네스의 품위는 커녕 한국 사회에서 노숙자 정도의 품위조차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대변해야 할 이유다.

지금 북한주민들은 고립무원(孤立無援)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다.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어찌 그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북한인권법이야말로 바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족의 법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국회의 행태가 참으로 비정하고 야속하다.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북한인권법을 만들면 북한 정권과의 관계가 악화된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민족 사랑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회라고 하겠는가. 영국의 의원들조차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판국이다.

아 ! 늦깎이 대한민국 국회여, 부디 북한주민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아주는 인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그것은 쌀과 비료를 주는 일보다 중요하며, 더 지체한다면, 북한주민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다.

토론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Ⅰ. 북한인권 제기의 당위성

먼저 북한인권문제 제기의 당위성과 관련해서 법적 관점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인권의 보편적 가치성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을 제기해야 한다.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않고, 또한 세계 최악 중의 최악인 북한인권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그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는 것은 인류 양심의 합일된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과 인간 이성'이 지금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엄숙한 시대적 명령이다. 이에 대한한국(구체적으로 정부와 국회 및 법원)과 그 국민들은 북한인권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인 북한주민들은 모두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대한민국)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은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사회주의적 연방제 통일이나 민중민주주의통일이 아님이 분명하고 헌법이 명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면, 그것이 가능한 조건 내지 전제로서 먼저 북한체제의 자유화 및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점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은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오늘날 국제활동의 중심지인 유엔은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을 유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별 결의안'을 채택하여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 인권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거듭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은 북한인권 개선이 인류의 법적·도덕적 확신임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인류의 법적·도덕적 확신 내지 인류 양심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것인 동시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연대, 특히 입법적 개입(legislative engagement)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통일정책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통일정책의 요소에는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합의서 채택, 통일교육 등이 있다. 이러한 통일정책 요소에 대해서는 모두 법률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정한 법제도적 기반 아래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만 법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법을 만들고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 일부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여섯째, 북한인권 개선을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노력이 춤을 추게 될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할 사안이지 정권의 정책이나 입맛에 따라 요동칠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Ⅱ.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북한인권법 제정과 같이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에서는 첫째,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및 활동원칙을 천명하고, 둘째, 북한인권 개선정책을 담당할 주체(주무부처와 유관부처)와 기능 및 해당 기관들

간의 상호관계를 설정하며, 셋째, 정책실현주체들이 추진할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실현수단(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 및 유기적인 협력 등)을 명시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 및 보호를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문제는 몇몇 사람이나 국가가 제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북한의 인권침해는 국가의 형태를 지닌 독재권력에 의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국가 차원의 범죄인 까닭에 그 개선을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설득과 압박이 요구된다. 정부의 대유엔 외교 등 국제공조가 긴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역량의 육성과 아울러 이들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성과를 거양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편적 가치에의 충실성, 헌법적 가치의 구현, 초당파성, 일관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는 입법보다 더 나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정권 교체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것이며, 이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매개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곧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은 물론이고 북한사회의 체제 개혁 및 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권의 역사는 거론하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개선(변화)이 있고, 침묵하고 외면하면 진전이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문제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제기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며 교육하는 데 이바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대북관, 균형잡힌 통일관 및 건전한 인권관을 갖도록 하는 데도 필요한 법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론의 입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결국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저자세를 표출하고 있으며, 화해·협력에만 치

우치는 불균형적인 대북 접근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권을 인위적으로 쪼개어 식량권만 강조하고 시민적·정치적 인권은 나중에 개선해도 좋다는 사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행 북한인권법은 당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빠져버린 속칭 '이빨 빠진' 것이다. 대북 정보 전달에 관한 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인도적 지원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런데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보는 국민들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 아무쪼록 북한인권법안은 가급적 원안(다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는 법무부 소관으로 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Ⅲ.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한 반론(補論)

1. 북한을 자극할 뿐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가입하였고, 그에 앞서 1981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반적으로 국제인권B규약이라고 하며 자유권규약으로 약칭되기도 한다)에 가입한 바 있다. 즉,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인권B규약의 당사국으로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의무를 진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지키라는 뜻이다(게다가 오늘날 유엔체제 하에서는 과거 국제연맹체제와는 달리 '중대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구성하지도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엔헌장은 인권문제를 탈국내문제화=국제문제화 시킨 국제조약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북한이 행한 국제적 약속을 지키라는 것을 두고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궤변이라고 할 것이다.

가시(假使, 만약) 가사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한다고 인정하자. 그러면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남한을 자극하는 것은 되고 남한은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면, 이는 심히 불균형적인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비무장지대-군사분계선 통행 차단조치,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일방적인 퇴거조치,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사건 등 얼마나 안하무인(眼下無人) 격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무도하게 도발했는가? 이를 북한에 따지지 않고 북한인권법만 이야기하는 것은 친북편향 및 종북 일관의 자세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할 뿐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杞憂)이며 친북편향의 저자세로 남북관계 현실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이를 고맙게 생각하고 대남도발을 자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우리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 '人' 자도 꺼내지 않았으나, 이 같은 행동이 북한의 대남자세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은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두차례 서해교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자극할까 노심초사하면서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자제하였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이름 아래 2003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불참'이라는 기상천외한 카드를 꺼낸바 있었다. 이후 2004년 4월과 2005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을 했고, 2005년 11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동년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기권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북 인권 저자세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동년 10월 제1차 북핵 실험을 막지는 못하였다. 곧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반기고 무력도발을 중단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실증해 보여준 것이다.

북한 핵실험이 있은 직후인 2006년 10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그 해 11월, 12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북한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목소리를 의식해 처음으로 찬성했다. 물론 북한은 이에 반발했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달리 북한인권에 대해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다른 문제와 분리하여 그 자체로 접근, 해결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한편, 찬성투표를 하여 왔다. 외견상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권외교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남북한은 금강산에서 2차례 이산가족을 상봉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쌀 40~50만톤, 비료 30만톤을 주어야 가능했던 일인데,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대규모 지원을 하지 않고도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켰으니 후자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더욱 실용주의적인 대북 접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2010년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15% 가량의 물적 교류 증대를 이룩했다.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북한인권문제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북한을 자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레짐작으로 겁을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2. 북한인권법이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다는 주장

일부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지나친 편견에 불과하다. 북한인권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원칙을 명시한 북한인권법 규정이 인도적 지원을 막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 햇볕정책 추진 시절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인도적 지원, 특히 '묻지마'식 혹은 '퍼주기'식 인도적 지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통일세력-반인도적 세력으로 매도했다. 그리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명분 앞에서 어느 누구도 반론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점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인도적 지원의 명분을 내건다고 해서 지원되는 물품이 모두 인도적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도적 지원은 명분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인도적이어야 인도적이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목적' 실현 혹은 인도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그것은 인도적 지원이 될 수 없다.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을 북한 군인이 먹게 되면, 그것은 군사적 지원이지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 그러한 쌀은 북한 군부나 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조달하는 것이 맞다.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북한 군인을 먹여 살릴 수는 없다고 하겠다. 북한군인은 군사적인 방법에 의해 대남적화혁명을 꿈꾸는 선군정치노선에 복무하는 세력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분배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더욱이 지난 시기 대북 지원식량을 상당 부분 군대에 우선적으로 분배하였던 북한 당국이기에 더더욱 분배 투명성의 요구는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북한인

권법에 반영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통일정책노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인권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금지 내지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용인하는 전제하에서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해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북한인권법이 인도적 지원을 막거나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억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

혹자는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현행 북한인권법안에서는 정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4개의 기구 설치를 명시하는 한편, 시민단체(NGO) 지원, 대유엔 외교,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입법의 결실을 보게 될 경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부활동과 NGO의 노력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곧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가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북한이 외부세계의 시선을 의식함으로써 올바른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간 NGO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유엔 기구가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북한 정권은 탈북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공개처형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또 2000년에는 16년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 B규약, 자유권규약)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98년 9월 헌법을 개정할 때는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었고, 2009년 4월에는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의 존중'이란 표현을 추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들은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운동이 실효성을 가짐을 말해주는 증거들이라고 하겠다.

한편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을 압살하는 북한붕괴법이라며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냈었다. 그러나 2011년 1월 한성렬 주유엔대표부 북한 차석대사는 미국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된 로버트 킹(Robert King) 북한인권특사에게 인도적 지원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 역시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4. 식량권 개선(인도적 지원)이 시급하고 북한인권 개선은 나중에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주장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식량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며 북한인권 개선은 나중에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현재 북한주민이 굶주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식량권 혹은 생존권의 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 식량 후 인권'(First food, and then human rights)의 주장은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에 따라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계급차별 내지 성분차별 정책에 따라 인도적 지원은 우리가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선군독재와 인권탄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목적' 내지 인도적 '결과'를 달성 내지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도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지원 내지 김정일 정권의 지원이라는 비인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로부터 한참 이전인 1950년대 후반에 이미 북한 정권은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의 인권탄압은 뿌리가 깊고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 그러기에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이란 역사적·민족적 과제를 더 이상 지체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쪼개어 전자를 앞세우고 후자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주장은 반인권적 논리요 이분법을 활용한 궤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개별적 인권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인위적으로 쪼개어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학자나 활동가 중에서는 대북 압박이 아니라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우선 북한이 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의 채택 등 국제사회의 개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001년과 2002년에 EU와 두 차례 인권대화를 개최한 바 있지만, 북한의 완강한 자세에 부딪혀 인권대화는 아무런 진전도 이룩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EU와의 인권대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한간에 인권대화가 성사되고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간 우리가 제기하여 온 국군포로·납북자문제에 대한 대화는 일종의 인권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연목구어(緣木求魚)와도 같이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채찍과 당근 혹은 압박 및 설득의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혹자는 북한의 김정일을 리비아의 카다피와 비교하면서 주민을 총칼로 탄압하는 독재자들이 정권의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인권대화에 호응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적어도 현단계에서 북한과 인권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북한인권법안에서도 남북대화를 통한 인권 개선 노력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인권법안 제10조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설치를 명시하면서, 동조 제3항 제6호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남북 접촉 및 교류협력'을 명시함으로써 남북대화·접촉 및 교류협력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안 제14조(남북교류·협력의 강화)에서는 "국가는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인권법안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및 설득도 역시 중요한 북한인권 개선의 수단으로 간주하면서도 남북대화 및 접촉,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 및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개선 요구에 호응토록 하기 위한 경성적(硬性的)인 수단·방법이 긴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보수우파진영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

일부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보수우파를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폄하한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순수한 인도주의' 구현 차원의 법안을 정파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입법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는 것은 민주당 등 야당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한 행동이 종북좌파노선에 영합하는 고도의 정략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즉, 북한인권법 반대론이 북한 수령독재 감싸기 내지 북한인권문제 축소하기 등 친북이적성을 갖는 등 좌파적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열악한 북한인권 외면을 정당화하고 친북좌파진영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 북한인권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균열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동안 수많은 가치세력과 양심세력이 북한인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한나라당 내의 다수 의원들은 여전히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추진이 보수우파를 정치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정치현실을 왜곡하는 억지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북한인권법이 북한붕괴법이라는 주장

이 밖에 2004년 10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을 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 법이 북한을 압살·붕괴시키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해외 탈북자 보호 및 지원, 북한 내 법치주의 정착 촉진, 인도적 지원 시 투명성 증대, 대북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해서 북한인권 특사 임명, 재정적 확보 등의 정책수

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인권 개선을 위한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한 인권 개선 노력에 의해 어느 독재정권이 무너진 바 있는가?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북한붕괴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공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Ⅰ)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Ⅰ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Ⅱ)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Ⅱ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Ⅱ)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Ⅲ)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0,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0, No. 1 (2011)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 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7,5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5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 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 · 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임강택, 임순희, 정영태, 김진하, 한기범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Ⅰ)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Ⅰ):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Ⅱ)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Ⅱ):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Studies Series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Scenario Workshop
Choi Jin Wook, Kim Kook Shin, Park Hyeong Jung, Cheon Hyun Joon, Cho Jeong Ah Cha Moon Seok, Hyun Sung 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 Teag, Kim Kyu Ryoon, Jang Hyung Soo, Cho Han Bum, Choi Tae 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 Ah, Suh Jae Jean, Lim Soon Hee, Kim Bo Geun, Park Young 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 Joon, Jeung Young Tae, Choi Soo Young, Lee Ki 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기타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KINU 학술회의총서 11-02

제1차 샤이오 인권포럼: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제1차 샤이오 인권포럼」은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북한인권 행사입니다.
'샤이오'는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Palais de Chaillot)을 의미합니다.
'샤이오 궁'이 세계인권 보호의 초석이 되었듯이 통일연구원은 「샤이오 인권포럼」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www.kinu.or.kr

KINU 통일연구원

9 788984 796201 93340
ISBN 978-89-8479-620-1